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1. 중앙통치조직
- 2. 지방·군사제도
- 3. 경제구조
- 4. 사회구조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1. 중앙통치조직

1) 관등과 관직

(1) 초기 관등제와 관직

가. 관등제

고대 초기의 관등조직은 연맹체를 구성하는 각 단위집단의 수장층을 왕권 아래로 편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관등조직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고구려의 경우 封王이나 賜姓 등을 통하여 각 집단의 수장층을 편제하였다.1) 내항한 비류국의 松壤이나 부여왕 從弟를 多勿都主나 王으로 봉한 것이나, 毛屯谷의 3인에게 사성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2) 또 大武神王대에 비류부의 대가 3인을 단순히 '沸流部長'이라 칭한 기사도 아직 那部의 諸加세력을 편제하는 중앙 관등조직이 마련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3) 고구려의 관등조직은 5나부체제가 확립된 태조왕 이후에 성립하였다.4)

고구려 초기 관등조직의 구조와 운영상은 《三國志》 高句麗傳의 기사를 통해 그 대강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3세기경에는 相加·對盧·沛者·古 雛加·主簿·優台·丞·使者·皀衣·先人 등의 관등이 있었다.5)

¹⁾ 성씨 사여에 대하여는 金光洙, 〈高句麗 建國期의 姓氏賜與〉(《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참조.

^{2) 《}三國史記》권 13, 高句麗本紀 1, 시조 동명성왕 원년·2년 및 권 14, 高句麗本 紀 2, 대무신왕 5년 7월.

^{3) 《}三國史記》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15년 3월.

塩泰敦、〈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韓國史論》2, 서울大 國史學科, 1975), 14等.

^{5)《}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상가는 그 명칭이 加를 영도한다는 뜻으로 제가세력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諸加會議의 의장으로 짐작된다.6)《三國史記》고구려본기에 군신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國相과 동일한 존재로 이해하기도 한다.7)

패자는 나부의 최고 유력자들을 편제한 관등으로,8) 左右輔・國相・中畏大夫 등 최고위 관직을 역임할 수 있었다.9) 아울러 패자는 나부의 군사를 동원하여 대외전쟁에 나서는 등 군사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10) 대로는 패자와 교치되는 관등인데,11)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패자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성립한 관등이었다.12) 대로는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초기기사에는 전혀 보이지 않으나, 후기의 최고 관등인 大對盧가 대로에서 분화된 관등임을 고려하면, 초기 관등조직에서도 최상위 관등으로서 대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⁶⁾ 相加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다. ① 제가회의의 의장으로 보는 견해: 盧重國, 〈高句麗國相考(上)〉(《韓國學報》16, 1979), 26쪽 및 琴京淑, 〈高句麗 初期의 中央政治構造〉(《韓國史研究》86, 1994), 104쪽. ② 5부족장 내지 대수장으로 이해하는 견해: 金哲埈,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127~128쪽) 및 金光洙, 〈高句麗의 '國相'職〉(《李元淳教授停年紀念歷史學論叢》, 1991), 6쪽. ③ 古雛加·沛者・對盧와 함께 지배자공동체를 구성하는 관으로 보는 견해: 武田幸男, 〈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朝鮮學報》86, 1978), 18~19쪽. ④ 相(최고관직)과 加(제가)를 구분하는 견해: 李鍾旭, 〈高句麗初期의 中央政府組織〉(《東方學志》33, 1982), 32~38쪽

⁷⁾ 盧重國, 위의 글, 26쪽.

⁸⁾ 余昊奎, 〈高句麗 初期 那部統治體制의 成立과 運營〉(《韓國史論》27, 서울大 國 史學科, 1992), 51쪽.

林起煥, 〈高句麗 初期 官階組織의 성립과 운영〉(《慶熙史學》19, 1995), 61~62쪽.

^{9) 《}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71년 10월·차대왕 2년 2월·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2년 정월·고국천왕 12년 9월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중천왕 7년 4월.

^{10) 《}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20년 2월 · 22년 10월.

¹¹⁾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관의 성격도 동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대로는 족장적 신분층에 속하고 패자는 그 족장을 보좌하는 관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으며(金哲埈, 앞의 책, 125쪽), 대로는 지방공무집행자의 기능을 갖고 패자는 군사적 임무를 띤 수장층의 직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光洙, 앞의 글, 173쪽).

¹²⁾ 패자를 那部의 최고 유력자에게 주어지는 관등으로, 대로를 方位部의 유력한 대가에게 주어지는 관등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林起煥, 앞의 글, 62~63쪽).

고추가는 왕실을 배출한 계루부의 大加나 전왕족인 소노부의 適統大人, 그리고 왕비족인 절노부의 대가가 칭하는 명예적 성격을 갖는 관이었다. 고구려에 복속된 朱那 왕자가 고추가로 봉해진 예를 보면,13) 고추가도 본래는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관등이었다가 점차 일종의 封爵的 성격을 갖는 관으로 변화되어 계루부 등 유력 나부의 대가만이 칭한 것으로 이해된다.14) 그러다가 나부체제가 해체되어 왕비족이나 전왕족이라는 정치 기반이 소멸되면서왕실 내의 제한된 범위에만 고추가라는 칭호가 주어졌다.15)

주부는 고구려 연맹왕권의 성장과정에서 왕권의 인적 지지기반으로 성립한 관등이었다.¹⁶⁾ 그리하여 대외군사 활동에 있어서 대가와 더불어 출정군의지휘부를 이루거나, 吳主로부터 고구려왕과 함께 詔書를 받는 등 왕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¹⁷⁾ 또 공회시에는 대가와 동급으로 인정받아 小加보다는 그지위가 우월하였다.¹⁸⁾ 丞 역시 명칭상으로 보아 주부와 유사하게 중국 관제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관등으로 보이나, 다른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그 실체를 알기 어렵다.¹⁹⁾

于台(優台)는 친족집단의 장들이 지녔던 일반적 칭호가 官名化한 것으로,²⁰⁾ 곧 나부의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기본적인 관등으로 기능하였다.²¹⁾ 우태는 위계 상 패자나 대주부보다 아래이지만, 추요직인 중외대부나 국상에 나아갈 수 있

^{13) 《}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22년 10월.

¹⁴⁾ 余昊奎, 앞의 글, 54쪽.

¹⁵⁾ 고추가의 성격을 신라의 葛文王과 비교하기도 한다(李基白,〈新羅時代의 葛文王〉,《歷史學報》58, 1973;《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7쪽).

¹⁶⁾ 金哲埈, 앞의 책, 128쪽. 盧重國, 앞의 글, 19쪽. 李鍾旭, 앞의 글, 44~46쪽.

^{17)《}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高句麗.

^{18)《}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및 권 47, 吳書 2, 吳主傳 2.

¹⁹⁾ 丞을 主簿·于台와 더불어 왕 직속의 관료집단으로 이해하는 견해(武田幸男, 앞 의 글, 126쪽)와 대가의 관료로 보는 견해(李鍾旭, 앞의 글, 46~47쪽)도 있다.

²⁰⁾ 金哲埈, 앞의 책, 128쪽.

²¹⁾ 余昊奎, 앞의 글, 126쪽. 林起煥, 앞의 글, 66쪽.

그러나 우태를 主簿와 더불어 왕의 직속 관료집단을 이루는 관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武田幸男, 앞의 글, 18~19쪽 및 李鍾旭, 앞의 글, 46쪽).

는 관등으로서,22) 패자 · 주부와 더불어 당시 제가세력의 상층부가 차지하였다.

사자·조의·선인은 왕이나 대가 밑에 설치된 전문적인 하급 행정실무직으로서, 초기 지배기구의 하부를 구성하는 관등이었다. 이들 관등은 대가도自置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대수장층의 職人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3) 여기서 계루부왕권 역시 대가들과 동일한 기반에서 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중 사자는 수취체제와 관련하여 성립된 관으로 파악되고 있다.24) 또 대무신왕대에 비류부장의 횡포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자를 파견한 예를 보면,25) 왕명을 수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조의의 실체는 알기어려우나, 나부의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최하위 관등으로 이해된다.26) 그러나東川王대에 吳나라의 사신을 조의 25인이 호위한 사례를 보면,27) 무사적 기능을 띠는 관으로도 볼 수 있다.28) 또 선인도 그 성격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초기부터 말기까지 최하위의 관등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첫 入仕職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관등으로 생각된다.

왕과 대가가 모두 하급관료인 사자·조의·선인은 설치하고 있지만, 그보다 상위의 대로·패자·주부·우태 등의 중앙관료조직을 갖추고 있는 계루부왕권의 위상은 대가와는 차별이 있었다. 따라서 왕의 관원과 대가의 관원은 같은 위계일지라도 동렬에 서지 못하였다.

이상《삼국지》고구려전에 보이는 관등 중에서 제가회의의 의장인 상가와 봉작적 성격의 고추가 및 실체를 알 수 없는 승을 제외하면, 초기 고구려의 관등은 대로·패자·주부·우태·사자·조의·선인의 7등급으로 파악된다. 이 중 패자·우태·조의 등의 관등은 나부의 제가세력을 서열화하여 왕권

^{22) 《}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차대왕 2년 7월·10월·권 16, 高句麗本紀 4, 고국천왕 13년 4월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동천왕 4년 7월.

²³⁾ 金哲埈, 앞의 책, 128쪽.

²⁴⁾ 金哲埈, 위의 책, 132~135쪽.

^{25) 《}三國史記》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15년.

²⁶⁾ 余昊奎, 앞의 글, 53쪽.

^{27) 《}三國志》 권 47, 吳書 2, 吳主傳 2.

²⁸⁾ 金光洙,《高句麗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研究》(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83), 103쪽.

아래로 수렴 편제한 성격이 두드러지며, 대로·주부·사자 등은 왕명의 수행자 내지는 왕권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왕권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성격을 지니는 관등으로 볼 수 있다.²⁹⁾ 이러한 초기 관등조직이 갖는 이원적 구조는 당시의 연맹적 국가체제가 제가세력의 연합에 기반을 둔 나부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하였다.

한편 제가세력은 그 세력 기반의 대소에 따라 大加와 小加로 구분되었다. 양자는 공회시에 대가는 幘을 쓰고 소가는 折風을 쓰는 등 冠制에서 구분이 있을 만큼 신분상의 차별이 있었다. 따라서 관등조직에 편제될 때에도 대가와 소가 사이에 차별을 두어, 좌우보·국상·중외대부 등 최고 관직을 역임할 수 있는 우태 이상의 관등은 대가가 차지하였고, 사자 이하의 관등은 소가급이었다.

이러한 관등조직의 운영을 통해 계루부왕권은 제가세력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갔다. 계루부왕은 대가가 자치한 사자·조의·선인 등관원의 명단을 보고받아 나부 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때로는 사자 등직속 관원을 파견하여 나부 내의 일에도 간섭하였다.30) 대외전쟁시에는 대가의 군대를 동원하였지만 동시에 주부를 보내어 대가의 군사활동을 감시 통제하였다.31)

계루부왕권은 관등의 수여를 통해서도 제가세력들에 대해 적절히 통제력을 발휘하였다. 왕의 즉위에 공을 세우거나 측근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높은 관등으로 승진시켜 이들의 나부 내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고, 이들을 통해 나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次大王이 자신의 즉위를 도운 관나부 우대 彌儒와 환나부 우태 菸支留 및 비류나부 조의 陽神 등을 각각 우태에서 패자와 대주부로, 조의에서 우태로 승진시켜 준 예나, 新大王이 차대왕을 죽이고 자신의 즉위를 뒷받침한 明臨答夫를 조의에서 패자로 승진시켜 國相으로

²⁹⁾ 余昊奎, 앞의 글, 51~56쪽. 초기 관등조직이 갖는 2원적 성격을 전제로 那部와 方位部라는 部조직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林起煥, 앞의 글, 72~75쪽).

^{30) 《}三國史記》 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15년 3월.

^{31)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5년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동천왕 12년.

임명한 예가 대표적이다.32) 이제 관등이나 관직의 획득에 있어서 독자의 세력기반 못지않게 왕권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점차제가세력들도 중앙의 왕권과의 결합을 통해 관등·관직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부에 대한 왕권의 침투력은 점점 높아졌다.

3세기 이후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분화가 진전되어 가면서 나부내 단위집 단의 자치적 성격이 약화되어 갔고, 각 나부의 지배집단은 축소된 친족집단 의 범주를 갖는 가문 단위로 분화하는 과정을 밟았다.33) 이처럼 나부의 독자 성이 약화됨에 따라 제가세력들의 연합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던 나부체제도 점차 해체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권은 관등·관직이나 食邑의 사여 등을 통해 제가들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새롭게 보장해 주면서 이들을 자신의 관료조직 내로 편제하고자 하였고, 자기의 독자적 세력기반이 흔들리던 제가세력들 역시 왕 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중앙 정치권력에의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보다 풍부 한 정치적·경제적 성과를 따라 움직여갔다. 이에 따라 3세기 말부터 제가세력은 王都로 결집하여 중앙귀족으로 전화되어 갔다.

왕도로 결집한 중앙귀족은 왕도의 행정구역인 方位部 내에 정착하였다. 예컨대 西川王의 왕비는 서부 대사자 于漱의 딸이었는데, 우수는 고국천왕비의 父인 연나부 于素와 동일 집단으로 보인다.34) 따라서 우수는 본거지인 연나부를 완전히 떠나 王京에 거주하면서 중앙귀족화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 烽上王대에는 처음으로 방위부 출신인 남부 대사자 倉助利가 國相으로 임명되고 있고, 봉상왕의 폐위와 미천왕의 즉위에 공을 세운 인물도 창조리를 비롯하여 북부 祖弗과 남부 蕭友 등 방위부 출신들이 중심이었다.35) 이처

^{32) 《}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차대왕 2년 및 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2 년

^{33) 3}세기 초반을 전후하여 왕족이나 那部의 지배족단을 위시하여 일반 기층사회에 서까지 친족집단간의 분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盧泰敦,〈高句 麗 초기의 娶嫂婚에 관한 一考察〉,《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103쪽).

³⁴⁾ 李基白,〈高句麗王妃族考〉(《震檀學報》20, 1959), 83~89\.

^{35)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봉상왕 3년 9월 · 미천왕 즉위년.

럼 당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왕비나 국상의 자리를 방위부출신의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사정은 이 시기 정계 운영이 이미 중앙귀족화된 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나부 지배세력이 왕도로 결집하여 중앙귀족화하면서,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기능과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는 이원적인 성격의 초기 관등조직도 변화·개편되게 되었다.

제가세력를 편제하는 기능이 사실상 퇴화되면서 그런 성격을 갖는 패자·우태·조의의 관등은 4세기 이후에는 소멸되었고, 그대신 兄系 관등이 등장하였다. 형계 관등은 사료상으로는 봉상왕대에 小兄에서 大兄으로 관등이 승진한 高奴子가 최초의 예이며,36) 또〈牟頭婁墓誌〉에서도 고국원왕대에 활동한 大兄 冉牟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兄이란 명칭은 연장자·족장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연원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37) 일원적인 관등체계 내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패자 등의 관등과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아울러 왕권을 뒷받침하던 관등인 대로·주부·사자의 관등은 大小로 확대 분화되어 갔다. 물론 주부와 사자는 2세기경부터 이미 대주부·대사자 등으로 분화되고 있었다.³⁸⁾ 이는 정복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고구려의 통치영역이 확대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관등과 관직의 분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 관등이 패자·우태·조의 등과는 달리 소멸되지 않고 4세기 이후 오히려 확대 분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곧 당시 관등제의 개편이 왕권 중심의 집권체제의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리하여 4세기 이후에는 사자계와 형계 관등이 다양하게 분화되어왕권 아래 일원적으로 편제된 관등조직이 성립하였다.

나. 관 직

나부체제가 확립되고 왕권이 제가세력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하면서, 연맹

^{36) 《}三國史記》권 17, 高句麗本紀 5, 봉상왕 2년 · 3년.

³⁷⁾ 金哲埈, 앞의 책, 130쪽.

³⁸⁾ 夫餘에서도 사자계 관등은 3세기경에 이미 大使·大使者·使者 등으로 분화되고 있었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체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관부와 관직이 설치되고, 제가들은 계루부왕권의 관료체계에 편입되어 중앙의 군신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관부조직과 관직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시 중앙정치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관직인 左輔・右輔와 國相 및 中畏大夫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처음에 군신집단을 대표하는 관직은 大輔로서,³⁹⁾ 왕의 측근 군신 중에서 임명되었다. 대보는 대무신왕대에 좌우보로 확대 개편되었다.⁴⁰⁾ 대무신왕이 후한에 사신을 보내 王號를 회복한 데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⁴¹⁾ 이 때에 계루부왕권이 크게 신장되면서 보다 확대된 연맹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관직으로 좌우보제가 실시된 것이다.

좌보·우보는 왕을 보필하고 군신의 대표자로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관직이었다. 42) 그러나 좌우보의 권능은 제한적이었다. 좌우보의 임명과 퇴출이왕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국정을 관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태조왕 71년(123)에는 좌보 穆度婁와 우보 高福章이 임명되었는데, 당시의 실권은 오히려왕제 遂成이 장악하고 있었다.43) 더욱이 수성이 왕위를 차지할 야심을 갖자 이를 견제하던 고복장은 결국 수성이 즉위한 후 살해되었으니,44)이는 좌보·우보의 직능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아직 제가세력의 중앙정계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태조왕대까지 좌우보에 임명된 인물들은 대개 계루부내의 대가나 왕의 측근세력이 중심이 되었다. 45) 그런데 차대왕대에는 나부세력의 동향에 변화가 나타났다. 태조대왕 80년 경부터 왕제 수성과 결탁하여 중앙정계에 등장한 환나부・관나부・비

^{39)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유리왕 22년.

^{40) 《}三國史記》 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8년 2월 · 10년.

^{41)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42) 《}三國史記》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8년 2월·10년 및 권 15, 高句麗本 紀 3, 태조대왕 71년 10월.

^{43) 《}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69년 11월.

^{44) 《}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차대왕 2년 2월.

⁴⁵⁾ 左右輔를 桂婁部 출신의 右輔과 4那部 출신의 左輔에 의한 공동정치운영방식으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金賢淑,〈高句麗 初期 那部의 分化와 貴族의 姓氏〉,《慶北史學》16, 1993, 30쪽).

류나부 세력이 차대왕 즉위 후에 좌우보·중외대부 등의 요직을 장악한 것이다.46)

제가세력의 중앙정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왕권 및 각 나부간에 갈등이 나타났다. 차대왕의 즉위는 태조대왕대의 정치운영에서 소외되었던 비류부를 비롯한 환나부·관나부의 반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차대왕대에도 여전히 그의 즉위에 공을 세운 일부 나부세력에의해 국정의 운영이 주도되면서, 여기서 배제된 연나부의 반발을 초래하여결국 연나부 조의 明臨答夫에 의해 차대왕이 시해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47)

이러한 왕권 및 제가세력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나부 제가세력의 전반적인참여 위에 성립된 새로운 정치운영체제가 國相制였다. 국상은 신대왕 2년에좌우보를 개편하여 설치되었는데,48) 국상의 기능 역시 좌우보와 마찬가지로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상의 권능은 좌우보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때로는 국상에게 군사권이 주어지기도 하였으며, 梁貊 등 예속민집단을 관장하는 권한이 부여되기도 하였다.49) 따라서 최고 관직인 국상에 임명되는 인물의 관등도 우태 이상이었다.

더구나 국상의 임기는 前王의 사망이나 新王의 즉위에 상관이 없이 종신 제로서, 그 임명 퇴출이 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50) 또한 당시 군신집단의 구성원이 제가세력이기 때문에 이를 대표하는 국상은 諸加會議의 의장으로 볼 수 있다.51) 따라서 국상은 대체로

^{46) 《}三國史記》 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80년・94년 및 차대왕 2년.

^{47) 《}三國史記》 권 15, 高句麗本紀 3, 차대왕 20년.

^{48) 《}三國史記》 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2년 정월.

^{49)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2년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중천왕 3 년 2월.

⁵⁰⁾ 盧重國, 앞의 글, 14쪽.

⁵¹⁾ 盧重國, 위의 글, 24~28쪽. 그러나 國相을 관료적 성격이 강한 군신집단의 長으로 이해한 글은 다음과 같다.

李鍾旭,〈高句麗 初期의 左右輔와 國相〉(《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9), 506~508\.

金光洙, 앞의 글(1991), 8~9쪽.

琴京淑, 앞의 글, 108~114쪽.

계루부를 비롯하여 전왕족인 비류부나 왕비족인 연나부 등 유력 나부 출신 이 차지하였다.

국상제로의 개편은 당시 왕권의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52) 제가세력들의 중앙정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국상제였다. 동시에 국상은 제가회의를 대표하는 관직으로 왕권에 대한견제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봉상왕대 국상 倉助利가 군신들과 협의하여 봉상왕을 폐위한 것이 그 예이다.53) 그러한 의미에서 국상제는 나부체제에 대응하는 정치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다.

中畏大夫는 좌우보나 국상 아래의 관직으로서, 우태 이상의 관등이 임명되었다. 고국천왕이 처음 乙巴素를 등용하여 중외대부에 임명하였을 때, 을파소가 그 관직으로는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사양하므로 다시 국 상직을 맡겼다는 기사를 보면,⁵⁴⁾ 국상보다는 직능이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외대부는 명칭상에서 중국 관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⁵⁵⁾ 왕의 근시직을 총괄하는 관직으로 추정된다.

(2) 4~7세기 관등제와 관직

가. 관등제

4세기 이후 律수의 반포와 중앙집권체제의 정비는 왕권을 중심으로 귀족세력을 일원적으로 편제한 정치지배 질서를 구축해 갔으며, 이를 바탕으로이 시기 왕권은 '聖王''太王'이란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전제적 권력을 유지하였다.56)이 시기 전제적 왕권의 기반은 일단 정치체제상으로는 관료체제의 구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나부체제의해체에 따라 초기 관등제는 兄系와 使者系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관등조직

⁵²⁾ 盧重國, 위의 글, 24~28쪽.

李鍾旭, 위의 글, 506~508쪽.

金光洙, 위의 글, 8~9쪽.

^{53) 《}三國史記》권 17, 高句麗本紀 5, 봉상왕 9년.

^{54)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고국천왕 13년.

⁵⁵⁾ 中畏大夫를 漢代의 御史大夫와 비교하는 견해도 있다(金光洙, 앞의 글, 1991, 8쪽).

⁵⁶⁾ 徐永大,〈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韓國文化》2, 서울大, 1981), 108~114쪽 참조.

으로 정비되었다.

4·5세기 관등제의 면모는 자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알기 곤란하다.《魏書》 고구려전에는 간략하게 謁奢·太奢·大兄·小兄 등 4관등의 명칭만 기록하고 있는데, 알사·태사는 각각 太大使者와 大使者의 다른 이름이다. 금석문에도 몇몇 관등이 보이는데, 고구려 광개토왕 18년(408)에 축조된 덕흥리벽화고분의 묵서명 중에는 小大兄이 있고,57) 장수왕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中原高句麗碑〉에는 대사자·拔位使者와 主簿의 관등명이 보인다.

전체 관등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의 윤곽만을 그려보면, 對盧를 비롯하여58) 대주부·주부의 분화가 추정되고, 사자계 관등으로는 태대사자·대사자·발위사자, 형계 관등으로는 태대형·소대형(대형)·소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루묘지〉를 보면 여러 대에 걸쳐 대형을 역임하는 모두루家에서 모두루가 대사자를 역임하고 있어, 이미 5세기에 형계 관등과사자계 관등이 교차되어 일원적으로 편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중원고구려비〉의 주부는 대사자보다 하위의 관등으로서 6세기 이후의 주부와는 위계가 다르기 때문에,59) 4·5세기의 관등제는 6세기 이후의 관등제와는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위서》고려전에서 상위 관등에 사자계 관등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이 시기에 전제적 왕권이 확립된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 · 7세기의 관등조직은 《周書》 · 《隋書》 · 《北史》 · 《新唐書》의 고려전과

⁵⁷⁾ 小大兄과 유사한 관등명으로는 대략 6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泰川 籠吾里城 磨崖石刻銘〉에 보이는 小大使者가 있다. 小大使者는 大使者로, 小大兄은 大兄으로 추정된다.

^{58)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21년조에는 '高句麗對盧齊于'의 존재가 보인다.

^{59) 〈}中原高句麗碑〉의 前面 2~3행과 8행에는 '前部大使者多兮桓奴主簿道使□□□' 란 구절이 보인다. 이 구절의 해석은 다양한데 主簿에 관한 견해만을 보면, 大使者 多兮桓奴의 관직으로 보는 견해(申瀅植, 〈中原高句麗碑에 대한 考察〉, 《史學志》13, 1979, 63쪽), 桓奴部 출신인 道使직 인물의 관등으로 보는 견해(李鍾旭, 〈高句麗初期의 地方統治制度〉, 《歷史學報》94・95, 1982, 86쪽) 등이 있다. 그런데 〈중원고구려비〉내에서의 인명 표기법이 官職名一部名一官等名一姓名임을 고려할 때, 主簿는 관직이 아니라 大使者에 대응되는 관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시기인 5세기 중엽에는 대사자보다 하위의 주부라는 관등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翰苑》에 인용된〈高麗記〉및《三國史記》권 40, 志 9, 職官志에서 볼 수 있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丑 1〉

고구려 관등조직표

周書	隋 書	新唐書	翰苑	三國史記 職官志
大對盧	太大兄	大對盧	大對盧(吐卒)	
太大兄	大兄	鬱折	太大兄(莫何何羅支)	
大兄	小兄	太大使者	鬱折(主簿)	主簿:(一吉飡)
小兄	對盧	皂衣頭大兄	大夫使者(謁奢)	大相:(沙飡)
意俟奢	意侯奢	大使者	皂衣頭大兄(中裏皂衣頭大兄)	位頭大兄:(級飡)
烏拙	烏拙	大兄	大使者(大奢)	從大相:(級飡)
太大使	太大使者	上位使者	大兄(襭支)	小相:(奈麻)
大使者	大使者	諸兄	拔位使者(儒奢)	狄相:(奈麻)
小使者	小使者	小使者	上位使者(契達奢使者, 乙奢)	小兄:(大舍)
褥奢	褥奢	小兄	小兄(失之)	諸兄:(舍知)
翳屬	翳屬	仙人	諸兄(翳屬, 伊紹, 河紹還)	先人:(吉次)
仙人	仙人	古雛大加	過節	自位:(鳥知)
褥薩			不節	
			先人(先元, 庶人)	
(13등)	(12등)	(12등)	(14등)	

위의 표를 보면《주서》고려전 등에 보이는 6세기의 관등조직의 구조와《한 원》〈고려기〉및《삼국사기》직관지 등에 보이는 7세기의 관등조직의 구조 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6세기의 관등조직은 형계 관등과 사자 계 관등으로 나뉘어 서술되어 있음에 반하여, 7세기의 관등조직은 형계 관등 과 사자계 관등이 서로 교차되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서마다 각 관등의 등급과 명칭에 약간의 異同이 있으며, 전체등급수에도 차이가 있다.《수서》·《구당서》·《신당서》고려전에는 12등으로기록되어 있고,《주서》고려전에는 13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명백히 관등이 아닌 褥薩을 제외하면 12등이다.〈고려기〉에는 14개 관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過節·不節은 관등명으로 보기 어렵다.⁶⁰⁾ 직관지에는 다른 사서에 보

⁶⁰⁾ 과절·부절은 하위 관직명으로 추정된다(林起煥,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이지 않는 自位가 최하위의 관등으로 나타나고 있다.⁶¹⁾ 이상의 기록을 검토하면, 6세기 이후 고구려 관등은 대략 12등~14등으로 변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먼저 상대적으로 자료가 풍부하고, 그 내용도 비교적 당대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한원》〈고려기〉와 《삼국사기》 직관지 기사를 토대로 7세기의 관등조직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⁶²⁾

〈표 2〉 7세기의 관등조직63)

1	大對盧(吐卒)	
2	太大兄(莫何何羅支)	
3	主簿(鬱折)	
4	太大使者(謁奢・大相)	
5	位頭大兄(中裏位頭大兄)	
6	大使者(大奢・從大相)	
7	大兄(襭支)	
8	拔位使者(儒奢・小相)	
9	上位使者(契達奢・狄相)	
10	小兄(失之)	
11	諸兄(翳屬・伊紹・河紹還)	
12	先人(先元・庶人)	
13	自位	

研究》, 慶熙大 博士學位論文, 1995, 89零).

⁶¹⁾ 自位에 대해서는 未入仕者에 대한 신분적 관칭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宮崎市定,〈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朝鮮學報》14, 1959, 273쪽 및 武田幸男, 앞의 글, 35쪽).

^{62) 〈}高麗記〉는 영류왕 24년(641)에 고구려를 방문한 職方郎中 陳大德의 견문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다른 중국 史書의 기록보다는 그 내용이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吉田光男,〈『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朝鮮學報》85, 1977). 또 職官志기사는 신라에 귀의한 고구려의 官人들을 대상으로 신문왕 6년(686)에 신라의 京位를 수여하는 기준과 원칙을 정한 기사로서(《三國史記》권 40, 志 9, 職官下), 최말기 고구려의 관계조직이나 관인사회의구조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리라 생각된다.

⁶³⁾ 上位使者 아래 小使者의 관등을 하나 더 설정하여 14관등으로 복원한 견해도 있다(武田幸男, 앞의 글, 4~5쪽). 그러나 小使者는 拔位使者의 이칭이라는 견해 도 있다(林起煥, 앞의 글, 94쪽).

다음 6세기의 관등조직을 살펴보자. 위〈표 2〉를〈표 1〉의《주서》기사와비교하면,64) 일단 개별 관등명의 상당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烏拙은 음운상鬱折(主簿)에 해당되는 관등이고, 緊屬은 諸兄의 異稱이다. 그리고 小使者・意俟奢・縟奢는 같은 사자계 관등인 7세기의 拔位使者와 上位使者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位頭大兄에 해당하는 관등이 없는데, 기록의 누락이거나 위두대형이 뒤늦은 시기에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65)

그리고《주서》고려전에는 6세기의 관등조직이 형계 관등과 사자계 관등으로 나뉘어져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자계와 형계 관등이 교차되어 구성되어 있었다. 〈平壤城石刻〉을 보면,660 당시 각 구간의 축조 담당자들의 관등은 소형이나 상위사자인데, 이는 상위사자와 소형이 대체로 비슷한 위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등명이나 등급 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6세기의 관등제도 7세기의 관등제와 기본 골격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70 다만 《주서》고려전 등에 형계 관등이 상위로 기록된 것은 귀족연립체제가 유지되던 6세기 관등제가 형계 관등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일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작된다.

그러면 7세기 관등조직을 중심으로 관등제의 운영상을 살펴보자. 제1위인

^{64) 6}세기 관계조직의 전모를 전해주는 자료는 《周書》·《隋書》·《北史》高麗傳인 데, 이들 사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인 唐初에 편찬되었다. 각 史書의 고려전은 대 개 동일 계통의 자료에 의거하여 서술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北史》의 기사는 褥薩을 제외하면 《周書》의 기사와 동일하고, 《周書》와 《隋書》의 기사도 大對 盧와 對盧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周書》기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⁶⁵⁾ 위두대형은 〈高慈墓誌〉에 보이는 고자의 祖 高量(三品位頭大兄柵城都督兼大相), 父 高文(三品位頭大兄兼將軍)의 예로 보건대, 6세기말~7세기초경에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580년 무렵까지의 기록이 실려있는 《周書》 고려전이나 610년까지의 사정을 전하는 《隋書》 고려전 단계에는 位頭大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意俟奢를 위두대형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며(宮崎市定, 앞의 글, 256쪽), 意俟奢의 '奢'는 오식으로서 '意俟'를 위두대형의 異稱으로보는 견해도 있다(林起煥, 앞의 글, 100쪽).

⁶⁶⁾ 평양성의 축조시기는 6세기 후반이다(閔德植,〈高句麗의 後期都城〉,《韓國史論》19, 國史編纂委員會, 1989, 206~211쪽).

^{67) 《}周書》 고려전의 기사를 그대로 인정하여, 《唐書》 고려전 단계에 비로소 官階 的 성격을 갖게 되고, 또 使者系 官階의 지위가 상승한 것도 지배계급내의 변 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 견해도 있다(金哲埃, 앞의 책, 137쪽).

대대로는 초기의 대로에서 분화·발전한 관등이다. 대대로의 성립시기는 알수 없으나, 6세기에는 당시 귀족연립정권 아래에서 귀족회의체의 의장으로서 기능하며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였다. 당시 대대로의 정원은 1명, 임기는 3년 이었으며, 대대로의 선임시에는 유력귀족들이 사병을 동원하여 무력충돌을 벌이기도 하였다.(88)

제2위의 태대형은 후기에는 집권적 관직인 莫離支라고도 하였는데, 국정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력 귀족가문의 대표자가 차지하였다. 정원은 다수였으며, 군사권을 장악한 관등으로 생각된다.⁶⁹⁾

나머지 관등의 구체적인 기능과 성격은 잘 알 수 없으나, 제5위의 위두대형 이상의 관등이 행정권과 인사권·군사권의 행사를 독점하는 최상위의 관등으로서,700 6·7세기 귀족연립정권기에는 귀족회의체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집작된다.

관등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武官의 경우를 보면 최고위급 무관직인 大模達에는 위두대형이상의 관등이, 그 아래의 末客에는 대형 이상의 관등이, 幢主에는 소형 이상의 관등이 임명되었다. 또 通事・典客・國子博士 등의 하위 관직에는 소형이상이 취임하였다. 71) 〈泉男生墓誌〉를 보면 남생은 선인에서 소형—대형—위두대형의 순으로 관등이 승진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대체로 위두대형・대형・소형・선인이 각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하한선임을 알 수 있다. 72)

이와 같이 관직과 대응되는 관등의 범주가 규정되고, 그것도 하나의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이 단일 관등이 아니라 복수의 관등군으로 묶여져 있다는 점은 신라 관등제의 운영과 유사하다. 73 이는 고구려의 관직체계 역

^{68)《}舊唐書》 권 199 下, 列傳 149, 高麗.

[《]翰苑》高麗.

⁶⁹⁾ 林起煥、〈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동향〉(《韓國古代史研究》5, 1992), 29~36等.

^{70)《}翰苑》高麗.

⁷¹⁾ 위와 같음.

⁷²⁾ 이를 통해 고구려 관등제가 4계층 구조를 갖고 운영되었던 것으로 이해한 경우도 있으며(武田幸男, 앞의 글, 43쪽), 대사자·상위사자·선인을 하한으로 하는 3계층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林起煥, 앞의 글, 1995, 110~111쪽).

시 신라 골품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등체계보다는 그것을 규제하는 신분 체계에 의해 성립·규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등제의 운영이 체계화되면서 冠制에도 구분이 있었다. 지배층은 折風을 쓰는데, 官人들은 거기에 새깃을 꽂아 구별하였다. 또 관인 중에서도 관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冠의 색깔에 구분이 있어, 왕은 백라관을 쓰고 大臣은 청라관을 쓰며, 하위의 관료는 강라관을 썼다. 대신의 관은 蘇骨이라고 불렀으며 금은으로 장식하였다.74)

나. 관 직

4세기 이후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되어 가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가운영의 업무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앙의 관부와 관료조직도 확대 개편되어 보다 세밀하게 분화된 국가행정을 담당하였다. 소수림왕대에 太學을 설립한 것은 국가행정 조직이 확대되면서 이에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소수림왕대에는 律令이 반포되는데, 이 때의 율령에는 관리의 위계제를 규정한 官位令과 왕궁 및 행정관서의 관원에 대한 규정인 職員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75) 그러나 사료의 미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고,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와 금석문에 몇몇 관직의 명칭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

拔古雛加는 빈객을 관장하는 관직으로서, 태대사자 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될 수 있는 관직이었다. 당의 鴻臚卿에 비견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외교사절의 접대 등을 담당하는 관부의 장관이었을 것이다.

舍人·通事·典客은 명칭에서 볼 때 중국 관제의 영향으로 설치된 관직으로 추정되는데, 소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취임하였다. 舍人은 중국에서 宮 內人의 뜻으로 근시직을 일컬었으며, 신라에도 왕의 근시관으로 역할하는 사인이 있었다. 고구려의 사인도 궁중의 일을 관장하는 근시직으로 추정된다.

⁷³⁾ 신라 관등제와 골품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李基東,〈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一潮閣, 1984), 133~134쪽 참조.

^{74) 《}周書》·《隋書》·《北史》·《舊唐書》·《新唐書》의 고려전에 전하는 고구려의 복식제에 관한 기사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官人과 非官人 및 관등 의 등급에 따른 구분이 있었음은 공통되는데, 이는 관료체제 발달의 결과이다.

⁷⁵⁾ 盧重國、〈高句麗 律令에 關한 一試論〉(《東方學志》21, 1979), 135~140쪽.

通事는 중국에서 전령을 관장하는 관직이므로, 고구려의 통사도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볼 수 있다. 典客은 당의 경우 홍로시에 속하여 외국사신의 접반을 담당하였다. 고구려의 전객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면, 발고추가 아래의 관직으로 짐작된다.76) 아니면 앞의 사인·통사와 더불어 왕의 근시직일 가능성도 있다.

長史·司馬·參軍은 광개토왕대에 처음으로 설치된 관직이었다.77) 이들 관직은 중국 남북조시대에는 지방세력인 都督의 幕府를 구성하는 막료였다.78)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는 대외관계나 군사업무에 있어서 왕의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사는 백제·왜 등 당시 다른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중국 왕조와의 외교관계에서 기능하는 관직이었다.79)

國子博士·太學博士는 중앙의 교육기관인 太學의 교수관으로, 소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취임하였다. 영양왕대에는 태학박사 李文眞이 당시까지 내려오던 역사서인《留記》를 줄여《新集》5권을 편찬한 바 있다.80)

2) 합좌제도

(1) 제가회의

나부체제에서 중앙정치세력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大加와 小加 등 제가세력이었다. 대가와 소가는 모두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갖는 존재로서, 부여의경우에 대가는 수천 가호, 소가는 수백 가호를 지배하였다.81) 고구려의 대가

⁷⁶⁾ 盧重國, 앞의 글(1979), 142~143쪽.

^{77) 《}梁書》 권 54, 列傳 48, 諸夷 高句麗.

長史・司馬・參軍 등의 관직은 덕흥리고분의 묵서명에도 보인다. 또 황해도 信 川郡 龍門面에서 '司馬'銘塼이 출토된 바 있다(林起煥, 〈낙랑 및 중국계 금석문 —塼銘篇〉,《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409쪽).

⁷⁸⁾ 金翰奎,〈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韓國古代의 國家 와 社會》, 一潮閣, 1985), 134等.

^{79) 《}宋書》 권 97, 列傳 57, 高句麗國 백제・왜의 長史에 대해서는 坂元義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 館, 1978), 398쪽 참조.

^{80) 《}三國史記》 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11년.

^{81)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와 소가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들 제가세력은 나부로 편제 되어 고구려연맹체의 지배층을 구성하였다.

계루부왕권은 각 나부의 외교권과 무역권을 박탈하고, 또 大加가 설치한 관료의 명단을 보고받는 등 나부 내의 일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한편으로 각 나부는 아직 일정한 정도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82) 제가세력은 나부를 기반으로 하호를 지배하고 독자적인 군사력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계루부왕권도 원할한 국내 통치와 대외정복활동을 위해서는 제가세력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만 하였고, 제가들은 이를 근거로 중앙의 정치운영에 참여하였다.

제가들이 국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중요한 통로는 諸加會議였다. 제가회의에서는 대외전쟁이나 국정의 중대사를 결정하여 당시 취약한 통치조직을 보완하며 국가 전체의 동원력과 통합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기능을 하였다.⁸³⁾ 특히 대외정복활동에서는 제가의 군사력이 동원되었으므로, 정복의 성과물의 분배나 공납물의 수취 사안들은 제가회의에서 결정되었을 것이다. 동옥저에서조세의 수취를 大加가 관장한 사실이나,⁸⁴⁾ 제가회의의 대표자로서 국상인 明臨答夫 등이 양맥부락을 통솔한 예에서 엿볼 수 있다.⁸⁵⁾ 이외에 제가회의에서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국사범들을 평의하는 기능도 갖고 있었다.⁸⁶⁾

한편 초기 제가회의에서는 왕을 치폐하는 등 왕위계승에도 간여하였다. 태조왕과 신대왕, 또는 산상왕의 즉위과정에서 보듯이,87) 前王이 살해되거나 후사가 없을 때 신왕의 즉위에 관여한 '國人'이나 '群臣'들은 곧 제가회의의 구성원들이었을 것이다. 부여의 경우에도 位居가 죽고 適子가 없자 제가들이

⁸²⁾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韓國史論》2, 서울大 國史學科, 1975), 13等.

⁸³⁾ 盧泰敦, 〈三國의 政治構造와 社會·經濟〉(《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1977), 214~215쪽.

^{84)《}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東沃沮.

^{85)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2년.

^{86)《}三國志》 권30,魏書30,烏丸鮮卑東夷傳30,高句麗.

^{87) 《}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대조대왕 즉위년 및 권 16, 高句麗本紀 4, 신 대왕 즉위년.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高句麗.

孽子인 麻余를 왕으로 세운 예가 있다.88)

이처럼 제가회의는 왕위계승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왕권을 견제하고 제가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국상 倉助利가 군신과 모의하여 왕권강화책을 추진하던 봉상왕을 폐위하고 미천왕을 즉위시킨 것이 대표적 인 예라 할 수 있다.89)

이와 같이 국정을 논의하고 왕권을 견제하여 제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가회의의 의장은 相加였다. 상가는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보이는 群臣의 대표자인 國相과 동일한 존재로 짐작된다. 다만 명칭상으로 볼 때 상가는 제가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 반면에, 국상은 왕권 아래 관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제가들이 점차 중앙귀족으로 편제되면서 제가회의의 기능 역시 변화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귀족회의

3세기말 이후 왕권이 강화되고 나부체제가 해체되어 가면서 제가세력은 중앙귀족으로 전화되었다. 제가세력의 존재형태가 변화하고 관등·관직제나지방제도 등 보다 체계화된 행정조직이 갖추어지면서 국정 전반을 논의하던 제가회의는 소멸하고, 그 대신 중앙귀족관료들의 합좌기구로서 귀족회의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4세기 이후 왕권은 중앙집권체제의 정비를 통하여 전제적 권력 기반을 구축해 갔다. 따라서 전제적 왕권이 행사되던 5세기에는 합좌제도로서 귀족회의체가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했을 지가 의문이다. 귀족회의체가 정치적 실권을 갖게된 것은 후기 귀족연립정권기에서였다.

安藏王 이후 고구려 왕권은 귀족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잃어갔다. 특히 왕위계승과정에 귀족들이 개입하면서 안장왕이 희생되었고, 그의 아우로 왕위를 계승한 安原王 역시 麤群과 細群의 두 외척세력의 정쟁과정에서 살해되고 말았다.90) 이렇듯 불안한 정국에서 왕권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유력

^{88)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89) 《}三國史記》권 17, 高句麗本紀 5, 봉상왕 9년·미천왕 즉위년.

^{90) 《}日本書紀》 권 17, 繼體天皇 25년 및 권 19, 欽明天皇 6년・7년.

한 귀족들이 정치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귀족연립정권을 성립시켰다.91) 귀족연립정권을 운영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구는 최고위 귀족들인 대신들 의 회의체인 귀족회의였다. 이 귀족회의의 의장은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인 大對盧였다. 그런데 대대로는 유력 귀족들의 역관계에 의해 선임되었다.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에 의하면 대대로의 임기는 3년인데 유력한 자가 있으면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서로 군사를 동원하여 정쟁을 벌여 이긴 자가 취임하였는데, 이 때 왕은 궁문을 닫아걸고 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즉 최고의 관직인 대대로의 선임에 왕권이 전혀 개입하지 못함으로써 고구려 왕은 정국을 주도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무력한 존재였고, 단지 귀족들이 대대로의 선임과정에서 세력관계를 조정하면서 정치운영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귀족연립정권의 정치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로 떠오른 것이 군 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莫離支였다. 막리지는 제2위의 관등인 太大兄과 동일 하거나 태대형이 취임하는 관직으로 보이는데,92) 당시의 유력 귀족가문의 대 표자들이 이를 차지하였으며, 대대로를 차지하기 위해 정쟁을 벌이는 유력한 후보였다.

귀족연립정권 아래에서는 대대로·태대형·울절·태대사자·위두대형의 관등이 "機密을 장악하고 政事를 도모하며 兵士를 정발하고 官爵의 인사권을 차지하는" 등 권력을 독점하였다.93) 따라서 이들 상위 5개 관등을 소지한 대신들이 귀족회의체의 구성원이었을 것이다.

⁹¹⁾ 盧泰敦, 〈5~6世紀 東亞細亞의 國際政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東方學志》44, 1984), 50쪽.

林起煥, 앞의 글(1992), 24~29쪽.

⁹²⁾ 武田幸男, 앞의 글, 24~32쪽.

林起煥, 위의 글, 29~32쪽.

그러나 莫離支를 大對盧와 같은 존재로 보는 견해(末松保和,〈新羅建國考〉,《新羅史の諸問題》,東洋文庫, 1954, 158~161쪽·李弘稙,〈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存疑〉,《韓國古代史의 研究》,新丘文化社, 1971, 301~304쪽 및 請田正幸,〈高句麗莫離支考〉,《朝鮮歷史論集》上, 1979, 120~121쪽)와 최고의 집권적 관직으로보는 견해(이승혁,〈고구려의 막리지에 대하여〉,《력사과학》1985-1, 19~21쪽)가 있다.

^{93)《}翰苑》高麗.

귀족회의에서는 중요한 국사를 논의·결정하고 정무를 처리하였다. 귀족회의의 의장인 대대로의 선임도 귀족회의에서 결정되었을 것이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귀족세력이 무력을 동원하여 정쟁을 벌였다. 또왕권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왕위의 계승문제도 귀족회의에서 관여하였을 것이다. 더이상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백제의 좌평회의나신라의 화백회의와 그 기능이 유사하였을 것이다.

귀족연립정권기에 각 유력귀족간의 세력관계를 조정하면서 국정을 장악한 귀족회의는 보장왕대 淵蓋蘇文의 집권기에는 그 기능이 약화·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정변을 일으켜 수많은 대신을 살해하고 집권한 연개소문은 太大 對盧와 太莫離支 등 최고의 집권적 관직을 신설하여 취임하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요직을 맡겨 사적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94)

이러한 동향은 대대로의 선임을 통한 귀족들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귀족연립정권의 정치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연개소문 개인이권력을 독점하는 무단적 정치행태 속에서 귀족회의체가 그 본래의 기능을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권력의 중심부에서 소외된 다른 귀족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국 당의 침입이라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중앙귀족들과 지방세력이 이탈하는 요인이 되었다.

〈林起煥〉

2. 지방·군사제도

1) 지방제도

지방통치제도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물적·인적 기반에 대한 파악방식이다. 따라서 당대 국가체제의 성격에 따라서 지방통치의 형태와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 고구려 지방통치의 변화·발전과정은 대체로 3시기로 나누어

⁹⁴⁾ 林起煥, 앞의 글(1992), 45~47쪽.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那部체제와 屬民지배방식에 의존하는 3세기까지의 간접통치기, 제2기는 城·谷을 단위로 직접적인 영역지배를 확대해 가는 4·5세기, 제3기는 6세기 이후 일원적인 城단위 지방통치조직을 갖춘 시기이다.

(1) 초기의 지방통치제

초기 고구려 국가의 통치체제는 那部의 자치성에 기초한 나부체제였기 때문에, 지방통치 역시 재지수장층인 諸加들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계루부왕권은 나부 관원의 명단을 보고받는 등 어느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였지만, 나부 내부의 일은 제가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나부는 그 내부에 다수의 단위집단을 포괄하고 있었다.《三國志》 고구려전에 보이는 '邑落'이 그것이다.²⁾ 그런데 이 읍락은《三國史記》고구려 본기에는 谷집단으로 나타난다.³⁾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고 原澤이 없으므로 山谷을 따라 거주한다"라는 기록처럼 압록강·동가강 유역의 지리적 조건 속에서, 곡은 고구려의 보편적인 취락군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이 곡집단은 고구려연맹체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지역별로 성장해온 단위 정치체로서, 나부체제 아래에서도 자치권을 갖는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 존 재하였다. 신대왕대 국상 明臨答夫에게 坐原・質山이 식읍으로 주어지고, 또 동천왕대에 공을 세운 密友와 劉屋句에게 巨谷・靑木谷・鴨綠杜納河原 등이

¹⁾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韓國史論》2, 서울大 國史學科, 1975), 13쪽.

^{2)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邑落은《三國志》에서 인식하는 동이족 사회의 보편적 존재로서, 고구려만이아니라 韓·沃沮·東藏·夫餘·邑樓 등 여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즉《三國志》東夷傳의 邑落은 한반도나 만주 각 지역의 취락집단 일반에 대한 명칭으로서, 이는 어떤 일정지역 내에서 혈연적 유대를 바탕으로 통일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단위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李賢惠,〈三韓의「國邑」과 그 成長에 대하여〉,《歷史學報》69, 1976, 8쪽).

林起煥,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朴性鳳敎授回甲紀念論叢》, 1987), 32 ~37쪽.

[《]三國史記》고구려본기에는 谷 이외에도 原 \cdot 川 \cdot 澤 \cdot 野 \cdot 水 등의 지명 어미를 갖는 지역집단들이 보이는데, 이들도 기본적으로는 谷집단으로 포괄할 수있다.

식읍으로 주어진 예에서4) 3세기 중엽까지도 인민·토지 등을 포함하는 곡집 단이 지배나 수취의 기본적인 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곡집단은 그 내부에 다수의 소집단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주몽세력에 흡수될 당시의 毛屯谷은 再思·武骨·默居로 대표되는 3개의 소집단으로 구성되어,5) 그 중 가장 세력이 강한 재사집단이 영도하는 곡집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곡 내부의 소집단은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지는 못하였다.6)

그런데 이 곡집단의 존재 형태나 세력기반은 다양하였다. 그 중에는 다른 곡집단을 통솔하면서 나부의 중심세력을 형성한 세력도 있었다. 나부 내의 部內部를 구성하는 나집단의 존재가 그것이다.7)

이러한 나부 내 단위집단의 존재에서 보듯이, 나부통치체제 아래에서 지방통치는 나집단이나 곡집단을 세력기반으로 갖는 재지수장층인 諸加세력의자치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大加들은 휘하의 관료인 사자·조의·선인을 매개로 조세수취 등의 자치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이들 단위집단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통치체제는 성립되지 않았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를 보면 초기기록에는 이러한 단위집단을 谷・原・澤・川・水 등지형적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행정적인 편제단위가 마련되지않았음을 반영한다.

한편 고구려는 초기부터 대외정복활동을 전개하여 정복지를 확대해 갔다. 압록강·혼강 유역의 경제적 기반은 고구려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만 한 것이 못되었고,⁸⁾ 따라서 고구려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 옥저·동옥저·양맥·동예 등 주변세력을 복속시켜 안정된 수취기반을 확대

^{4)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8년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동천왕 20년.

^{5)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시조 동명성왕 즉위년.

⁶⁾ 林起煥, 앞의 글, 40쪽.

⁷⁾ 部內部에 대해서는 盧泰敦, 앞의 글, 25~34쪽 참조. 부내부를 다수의 곡집단이 결합된 那집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林起煥, 앞의 글, 46쪽). 부내부의 존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三國史記》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15년조의 '三沸流部長'과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고국천왕 12년조의 '四椽那'이다.

^{8) 《}三國志》권 30, 魏書 30, 鳥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傳의 "좋은 田地가 없으므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기록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해 가는 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복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역 지배는 실시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반자치적, 경제적으로 공납적 지배를 통한 간접적인 집단지배를 실시하였다.

예컨대 3세기 중엽 고구려는 동옥저의 읍락사회를 해체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동옥저의 大人을 使者로 삼아 자치권을 주어 통솔케 하는 한편 고구려의 大加로 하여금 조세 등 공납물의 수취와 노동력의 동원을 감독케 하였다.9) 이는 당시에 행해진 간접적 속민지배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북옥저와 양맥도 동옥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배되고 있었다. 북옥저의 경우 중심 읍락인 東海谷에서 3세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공납을 바치고 있었고,10) 양맥부락도 서천왕대까지 대가세력에 의해 통솔되고 있었다.11) 당시대가세력이 각 속민집단으로부터의 공물수취와 분배에 참여함은 속민집단을 복속하는 과정에서 대가의 군사력이 동원된 결과였다.

그런데 연맹체의 외곽에 존재하는 이들 속민집단은 그 사회의 독자성이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재지수장층을 통한 간접지배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지배력 약화 내지 중국군현의 세력침투를 계기로 고구려 세력권에서 쉽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컸다. 예컨대 동천왕대 毋丘儉의 침입시 동예가 이탈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12) 따라서 고구려왕은 수시로 이들 지역에 대한 巡狩를 행하여 그 지배권을 공고히 하였다. 태조왕대의 柵城 순수와 서천왕대의 新城 순수는 북옥저를 비롯한 두만강 유역에 대한 통치권의 확인이며, 태조왕의 南海 순수는 동옥저에 대한 지배권의 확인이었다.13) 즉 고구려 초기에 왕의 변경 순수는 당시 속민집단에 대한 지배의 미숙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행해졌다.

^{9)《}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東沃沮.

^{10) 《}三國史記》권 14, 高句麗本紀 2, 민중왕 4년·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55년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동천왕 19년·서천왕 19년.

^{11)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2년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서천왕 11년

^{12)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濊.

¹³⁾ 金瑛河,〈高句麗의 巡狩制〉(《歷史學報》106, 1985), 61~65쪽.

(2)「성·곡—촌」제의 성립

4세기 이후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초기의 다원적이고 간접적인 지방지배방식은 극복되어 갔다. 자치권을 갖고 있던 단위집단들이 지방행정단위로 개편되고, 거기에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렸다.

나부통치체제가 해체되어 가면서 재지 수장층인 제가세력들은 수도로 올라와 중앙귀족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이들이 다스리던 나부지역은 각단위 곡집단이 지방행정단위로서 城과 谷으로 편제되었으며, 아울러 곡집단내부의 소집단들은 村으로 편제되었다.

2세기 고국천왕대에 國相으로 임용되었던 乙巴素는 西鴨綠谷 左勿村 출신이었다. 여기서「谷一村制」로 정비된 지방행정조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데, 당시에는 아직 나부체제가 유지되는 시기이므로 이 기록은 후대에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山上王의 小后는 灌奴部 출신인데,《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는 酒桶村 출신으로 나온다.14) 즉 나부 내의 소집단을 중앙에서 촌으로 파악하고 있는 예이다. 또 3세기말 美川王은 烽上王의 박해를 피해서 압록강 일대에 숨어 지냈는데, 이 때 그의 행적을 기록한 기사에는 다수의 촌명이 보이고 있으며, 이들 다수의 촌을 다스리는 谷단위 지방관으로 鴨綠率가 등장하고 있다.15) 이러한 사례들은 나부체제의 해체과정에서 나부의 단위집단들이 점차 谷一村으로 개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16)

한편 공납적 지배를 하던 속민집단에 대해서도 3세기말부터는 점차 각 읍 락을 城·谷으로 편제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려 직접적인 영역지배를 도모하였다. 봉상왕대에 동북 新城의 宰와 서북 신성의 太守를 역임한 북부 출신 高奴子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¹⁷⁾ 고노자가 파견된 동북 신성은

^{14)《}三國志》 권 30, 魏書 30, 鳥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三國史記》 권 16, 高句麗本紀 4, 산상왕 12년.

^{15) 《}三國史記》권 17, 高句麗本紀 5, 미천왕 즉위년.

¹⁶⁾ 乙巴素는 계루부 소속일 가능성이 있고, 또 당시에는 계루부내 제가세력을 수도의 방위부로 개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부에 비해 谷—村制로의 개편이 일찍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灌奴部도 상대적으로 그 세력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那部의 기능을 일찍 상실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7) 《}三國史記》 권 17, 高句麗本紀 5, 봉상왕 2년・5년.

북옥저 지역이고, 서북 신성은 양맥을 지나 서북부 최변경의 요충지로서, 양 지역 모두 과거에 속민지배가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이들 정복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역지배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교통로상의 군사적 요충지에 성을 축조하고 이를 거점으로 교통로상에 위치한 여러 집단을 행정단위로 편제하여 통치하였던 것이다.18) 광개토왕대에 활동한 牟頭婁의 묘지에는 '北道城民谷民'이란 구절이 보인다.19) 여기의「道」는 부여의 四出道의 道, 또는 고구려 후기 지방관명의 하나인 道使의 道와 같은 의미로, 교통로 또는 그 교통로상에 위치하는 지역을 뜻한다.20) 이는 북부여지역이 북도란 교통로를 중심으로 성과 곡이란 행정단위에 의해통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이다.

이러한「성・곡—촌」제에 입각한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제를 잘 엿볼 수 있는 자료는 〈廣開土王陵碑〉의 守墓人烟戶條이다. 수묘인이 차출된 舊民지역 14곳 중에 성이 7곳・곡이 2곳이며, 新來韓穢지역은 총 36곳 중 31곳이 성이다. 여기서 당시에 성・곡을 단위로 한 지방통치체제가 보편적으로 전개되고, 그 중에서도 성단위 통치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구민지역 중에는 과거 북옥저・동옥저지역과 양맥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에도 과거의 간접적인 속민지배형태가 완전히 청산되고 성・곡을 단위로 한 직접적인 지방지배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21) 물론 성・곡의 행정단위가 아닌 특수한 지배형태도 여전히 존재하였지만,22) 전반적으로 성・곡지배체제가 관철되어 갔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

성·곡의 행정단위 아래에는 村制가 실시되었다. 〈광개토왕릉비〉에 의하면 영락 6년(396)의 백제정벌전에서 58성 700촌을 획득하였다. 여기서 성과촌의 비율은 대략 1:12가 되어, 한반도 중부지역은 1개 성 아래에는 대략 10여 개의 촌이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촌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

¹⁸⁾ 余昊奎,〈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남도와 북도를 중심으로—〉(《韓國史研究》91, 1995).

¹⁹⁾ 武田幸男、〈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朝鮮學報》99・100, 1981).

²⁰⁾ 武田幸男, 위의 글, 160쪽.

²¹⁾ 林起煥, 앞의 글, 63~64쪽.

²²⁾ 武田幸男、〈廣開土王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東洋文化研究所紀要》78, 東京大、1978)、126~139等.

하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자연촌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23)

지방관은 성과 곡 단위에 파견되었다. 이 시기의 지방관으로는 《삼국사기》에 宰와 太守・守가 보이나,²⁴⁾ 이러한 중국식 지방관명이 그대로 사용되었는 지는 의심스럽다. 다만 봉상왕대의 고노자가 小兄으로서 동북의 新城宰를 역임하고 다시 승진하여 大兄으로서 서북의 新城太守를 역임하는 것을 보면, 재와 태수 사이에는 지방통치 조직상의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한편 5세기 금석문 자료에는 守事가 보인다. 즉〈모두루묘지〉의 '令北夫餘守事'와〈中原高句麗碑〉의 '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 등 두가지 사례가 있다. 수사의 관등이 대형 이상급이라는 점에서, 고노자의 예에서 보이는 태수와 동일한 성격의 지방관으로 볼 수 있다. 이 태수와 수사는 관등상으로 볼 때 6세기 이후의 處閻近支(道使)에 해당된다. 수사 아래의 지방관명은 사료에 나오지 않으나, 신성재 고노자의 예에서 대개 소형급이 역임하였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후기의 婁肖에 해당된다.

4·5세기에는 아직 수사보다 상위의 지방관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는 다수의 성·곡을 통솔하고 있었다. 예컨대 모두루는 영북부여수사로서 북도지역인 북부여 일대를 관장하고 있었고, 수사가 파견된 古牟婁城도 중원 일대의 여러 성을 통할하는 중심 성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4·5세기에는 지방관으로 볼 때 太守(守事)—宰의 2단계 지방통치조직을 갖추었던 것으로 짐작된다.26)

이러한 $4 \cdot 5$ 세기의 지방통치조직을 6세기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지역단위의 광역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행정단위로서 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곡이나 특수한 행정단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²⁷⁾ 성단위의일원적인 지방통치조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²³⁾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韓國史論》 7, 서울大 國史學科, 1981), 82~83쪽.

^{24) 《}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55년 10월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서천왕 19년 4월·봉상왕 2년·5년·미천왕 즉위년.

²⁵⁾ 중국에서의 용례도 太守는 郡守이고, 宰는 縣令을 가리킨다.

²⁶⁾ 林起煥,《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慶熙大 博士學位論文, 1995), 154쪽.

^{27) 〈}광개토왕릉비〉수묘인연호조에 보이는 舊民지역의 東海賈·賣句余民·連·俳 婁人이나,新來韓濊지역의 豆比鴨岑韓·句牟客頭·求底韓·百殘南居韓 등은 특 수한 행정단위이다.

(3) 성단위 지방통치제

6세기 이후에는 지방행정조직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그 일면을 전하는 기사가 《隋書》고려전의 "內評外評五部褥薩"이란 기사이다.²⁸⁾ 이를 內評·外評·五部로 나누어 내평을 경기, 외평을 지방, 5부를 왕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²⁹⁾ 내평 5부와 외평 5부로 나누어 내평은 왕도, 외평은 지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⁰⁾ 내평과 외평의 구분은 당시 왕도와 지방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였음을 보여준다.

도성제로서는 3京制가 마련되었다. 수도인 평양성과 國內城‧漢城을 3京이라 하였는데,31) 이들 도성의 행정구역은 上部(동부)‧下部(서부)‧前部(남부)‧後部(북부)‧中部(내부) 등 5부로 나뉘었다.32) 특히 수도의 행정구역은 內評으로 불리웠으며, 내평 5부에는 褥薩을 두어 통치하게 하였다.33) 이들 3경에는 지배충들이 주로 거주하였으며, 3경의 주민은 일반 평민이라 하더라도 지방민보다는 우대받았을 것이다. 3경의 평민들은 지방민과 마찬가지로 조세의부담을 졌으며, 5부병의 군사조직으로 편제되었다.

지방은 外評이라하여 역시 5부로 나누었을 것으로 짐작되나,³⁴⁾ 구체적인 통치구역은 알 수 없다. 고구려 멸망기에 전국에는 176개의 성이 있었는데, 지방행정조직은 이들 성을 단위로 하여 중층적으로 편제하여 구성하였다. 구

^{28) 《}隋書》 권 81, 列傳 46, 高麗.

²⁹⁾ 武田幸男、〈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朝鮮三國と倭國、學生社、1980)、38~40쪽.

³⁰⁾ 山尾幸久,〈朝鮮三國の軍區組織〉(《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1974), 155쪽. 林起煥, 앞의 책(1995), 152~153쪽.

³¹⁾ 漢城은 黃海道 新院郡 峨洋里 일대로 비정된다. 이 일대에서는 고구려시대의 대규모 건축지와 고분군이 확인되고 있다. 또 북쪽 1.5km 떨어진 곳에는 장수 산성이 있다(손영종,《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175~187쪽).

^{32) 〈}平壤城石刻〉에 '漢城下後部'가 보임으로써, 한성과 국내성에도 평양성과 마찬 가지로 5부의 행정구역제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³³⁾ 국내성과 한성에도 5부제를 실시하였음을 보면, 3경 모두에 內評의 5부 욕살을 두었을 가능성도 크다.

³⁴⁾ 지방 통치구역으로서의 5部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나,《舊唐書》 권 199 下, 列傳 149, 高麗傳의 "高麗國은 5部로 나누어 176城과 69만 7천 戶가 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5部를 지방 통치구역으로 볼 수 있다.

체적인 행정단위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지방관을 중심으로 볼 때에는 褥薩一處閻近支(道使)—可邏達·婁肖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35)

지방통치의 중심지인 大城에는 최고 지방관인 욕살이 파견되었다. 욕살은 당의 지방관인 都督에 비견되는데, 〈고자묘지〉에 高量이 三品柵城都督位頭大 兄을 역임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서도 도독으로 부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36) 이 욕살에 임명될 수 있는 관등은 대체로 제5위인 위두대형 이상이었다.37)

욕살은 5세기의 사료에는 보이지 않고,《주서》고려전에 최하위 관등명으로 처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지방관명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수서》고려전에는 내평과 외평의 5부에 욕살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6세기의 사정을 전하는 史書에 욕살의 명칭이 처음 등장함을 보면, 욕살의 설치는 6세기 무렵으로 짐작된다. 최고위 지방관인 욕살의 등장은 광역의 행정구역이설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6세기에 들어 지방통치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 결과이다. 욕살은 중앙의 명령을 받아 하위 행정단위에 전달하고 또이를 통솔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욕살 아래의 지방관은 처려근지로서 일명 도사라고도 하였다. 5세기의 지방관인 수사에 해당하며, 7위인 대형 이상의 관등이 임명되었다. 당의 지방관인 刺史에 비견되는 존재로, 휘하에 여러 小城들을 거느렸다. 당과의 전쟁시에 전략상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안시성・백암성・개모성・건안성・부여성・비사성 등의 성주가 바로 처려근지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처려근지의

^{35) 《}翰苑》에 인용된〈高麗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그 諸大城에는 傳薩을 두는데 都督에 비견되고, 諸城에는 處閭(近支)를 두는데 刺史에 비견되며 道使라고도 한다. 諸小城에는 可邏達을 두는데 長史에 비견되며, 또 城에는 婁肖를 두는데 縣令에 비견된다"위 기사에 의한 지방통치구조는 褥薩—道使—可邏達—婁肖의 4단계로 파악되기도 하고(盧重國、〈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東方學志》21,1979,147~149零)、褥薩(一司邏達)—道使(一可邏達)—婁肖의 3단계로파악되기도 한다(武田幸男、〈朝鮮三國の國家形成〉、《朝鮮史研究會論文集》17,1980,41~43零).

^{36) 〈}德興里古墳 墨書銘〉에도 '中裏都督'이란 명칭이 보인다.

^{37) 《}冊府元龜》권 170, 帝王部來遠條의 "高麗位頭大兄里大夫後部軍主高延壽, 大兄 前部軍主高惠眞"이라는 기사에서 욕살인 高延壽의 관등이 位頭大兄임을 알 수 있다.

치소는 '備'라고 불리었다.

최하위의 지방관은 可邏達과 婁肖였다. 당의 長史에 비견되는 가라달은 욕살이나 처려근지의 직할지를 관장하는 막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³⁸⁾ 그리고 당의 현령에 비견되는 누초는 일반 최하위 소성에 파견된 지방관이었다. 즉 가라달과 누초는 동급의 지방관으로, 대개 소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역임하였을 것이다.³⁹⁾

지방관이 파견되는 최하위 행정단위는 城이었으나, 성 내부에는 4·5세기와 마찬가지로 村이라는 말단 행정단위가 편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촌은 대체로 호구의 파악이나 조세와 노동력의 징발 등 수취 부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6·7세기의 지방조직은 욕살·처려근지·누초를 지방관으로 하는 3단계 구조였기 때문에, 당대 중국 사서에서는 이를 唐의 都督府—州—縣의 구조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지방조직의 구조는 당과는 전혀 달랐다.

먼저 욕살이 관장하는 통치 구역은 5부로 추정되는데, 사료상으로는 욕살이 파견된 성으로 栅城과 烏骨城이 확인된다. 책성은 두만강 하구지역인 琿春 일대로서 고구려 초기부터 동북방의 요충지로 중시되었으며, 오골성은 오늘날의 요동 봉황성으로서 요동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으로 요동지역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이들 책성과 오골성은 5부의 치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욕살이 파견된 성이 반드시 다섯이었는지는 확인할수 없다.

한편《新唐書》고려전에는 고구려의 州縣을 60성이라 하였는데,《舊唐書》 고려전에 의하면 멸망후 고구려 지방 성의 총수는 176성이었다. 따라서 60여 성은 고구려 지방행정단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처려근지가 파견되는 행정단위 이상의 성으로 짐작되며, 나머지 110여 성이 누초급이 관

³⁸⁾ 長史는 '遼東城長史'의 1예가 보이는데(《三國史記》권 21, 高句麗本紀 9, 보장왕 4년), 요동성은 요동지역의 요충지로서, 褥薩이나 적어도 道使급 이상의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요동성 長史는 遼東城主가 아니라 그의 막료일 것이다.

^{39) 〈}平壤城石刻〉에 보이는 축성책임자가 上位使者나 小兄임에서 추론할 수 있다.

장하는 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성과 소성의 비율은 대략 1:2가 되는데, 이는 《삼국사기》지리지에 보이는 고구려의 군과 현의 비율과도 일치하고 있다.40) 따라서 지방행정의 통속관계를 보면, 5부의 욕살은 휘하에 처려근지가다스리는 10여 성을 거느리고, 처려근지는 누초가 파견된 2~3개 소성을 통솔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각 지방행정단위의 명칭은 알 수 없다.41)

그런데 상하 지방행정단위는 모두 독자적인 통치영역을 갖고 있었다.42) 상위 행정단위라 하더라도 관할구역을 모두 직접 관장한 것은 아니고, 명령수수계통에 있어서만 하위 행정단위를 통솔하고, 행정·군사적으로는 직할지만을 관장한 것으로 집작된다.

한편 지방관은 행정조직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군의 지휘관의 역할도 겸하였다. 당태종의 침입시에 안시성을 구원하기 위해 북부 욕살 高延壽와 남부 욕살 高惠眞이 15만 고구려군을 이끌고 출정한 사실이나,43) 수·당과의 전쟁에서 각 성의 城主가 곧 군지휘관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알수 있다.

^{40) 《}三國史記》권 35, 雜志 4, 地理 2의 漢州·朔州·溟州條에서 고구려 영역이었던 지역의 郡은 51개(州포함), 縣은 95개로서 대략 1: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地理志에 나타난 통일신라시대 전영역의 군현 비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 통일신라시대 州郡의 총수는 129개, 縣은 304개로 대략 1:2.3의 비율이다.

⁴¹⁾ 처려근지와 누초가 파견된 성을 郡·縣으로 청하였을 가능성은 있다.《三國史記》권 35, 雜志 2, 地理 2에는 고구려의 지방행정명을 군과 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현의 청호를 단순히 후대 신라의 군현조직이 소급 부가된 기록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또 고구려 무관명인 末客은 '郡頭'라고도 불리었는데, 지방행정조직과 지방군사조직이 동일체계로 편제되었음을 고려하면 郡頭는 일종의 郡단위 지방관명으로도 볼 수 있다. 또 고구려 율령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신라에서 郡이라는 지방행정단위가 시행된 점과 백제에서 郡(郡長)의 행정단위가 설정된 점도 고구려에서 최소한 郡이란 행정단위가 설정되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⁴²⁾ 이는 〈廣開土王陵碑〉의 수묘인연호조에서 상급단위의 성이나 하급단위의 성의 구분없이 모두 수취체제의 단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林起煥, 앞의 책, 1995, 146쪽). 통일신라의 州郡縣制에서도 州‧郡은「소영역」으로서의 독자적인 지배영역이 설정되어 있었다(姜鳳龍,《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4, 207~209쪽).

^{43) 《}三國史記》권 21, 高句麗本紀 9, 보장왕 4년.

2) 군사제도

(1) 군사조직의 변화

고구려가 일어난 압록강·혼강 일대의 지리적 조건은《삼국지》고구려전의 기록대로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이 없으며, 좋은 田地가부족하므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었다.44) 따라서 고구려인들은 대외정복활동을 통하여 전쟁포로와 전리품을 획득하거나 공납물을 수취하여 부족한 생산물을 보충하였다. 토질이 비옥하고 농업생산물이 풍부한 동옥저를 복속시켜 조세를 비롯하여 貊布와 魚鹽 등 해산물을 수취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45)

고구려는 이와 같은 약탈전쟁이나 복속지를 확대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초기부터 활발하게 전개하였기 때문에, 《삼국지》고구려전에는 "그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46)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고구려는 일찍부터 군사조직이나 군사동원체계를 잘 갖추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초기 고구려의 국가체제는 자치권을 갖는 那部의 연맹체제였기 때문에, 군사조직에 있어서도 각 나부가 군사조직의 단위가 되었을 것이다. 태조왕대에 관나부 패자 達質와 환나부 패자 薛儒가 각각주변의 소국인 藥那와 朱那를 정벌한 사실에서도 나부를 단위로 하는 군사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47)

또한 新大王 5년(169)에는 大加 優居와 主簿 然人이 군사를 거느리고 현도 태수 公孫度를 도와 富山賊을 토벌한 바 있고, 또 동천왕 12년(238)에 위나라 가 公孫淵을 공격할 때에도 대가와 주부에게 군사 천여 명을 거느리고 원조케 한 바 있다.48) 이 때 대가가 거느린 군사는 곧 대가 자신이 지배하는 나

^{44)《}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高句麗.

^{45)《}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東沃沮.

^{46)《}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高句麗.

^{47)《}三國史記》 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20년・22년.

^{48)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5년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동천왕 12년.

부에서 동원된 군사들이었을 것이다. 다만 대가와 더불어 왕의 측근세력인 주부가 출정군의 지휘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계루부왕권이 주부를 통하여 대가들의 군사활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부 통치체제의 진전에 따라 계루부왕권이 대가들이 설치한 관원의 명단을 보고받는 등 나부 내의 일에도 어느 정도 통제력을 발휘했던 동향과 짝하는 것이다.

한편 제가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거느리고 고구려왕이 주도하는 군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전쟁에서 얻어지는 성과물을 분배받거나 군공에 대한 포상으로 식읍을 하사받는 등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았을 것이다. 예컨대 복속지인 동옥저로부터 조세 등 공납물을 징수하는 일을 대가가 주관한다거나,49) 國相 明臨答夫나 安國君 達賈로 하여금 梁貊부락이나 肅愼부락을 통솔케 한 사실에서 그러한 면을 엿볼 수 있다.50) 또 군공으로 식읍을 받은 예로는 동천왕대 관구검의 침입시 동천왕을 호위한 동부 密友와 하부 劉屋句가 식읍을 하사받은 경우를 들 수 있다.51)

이와 같이 초기에는 군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부의 주민 모두가 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삼국지》부여전을 보면, 부여에서는 집집마다 갑옷과 병장기를 소유하고 있고, 또 전쟁시에는 諸加들이 스스로 싸우고 下戶는 식량 등을 공급하는 일종의 보급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52)

물론 일반 피지배계층인 하호가 집집마다 무기를 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여의 각 읍락은 지배층인 豪民과 피지배층인 하호들로 구성되었는데, 하호와 구별되는 글자 그대로 「부호한 민」인 호민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춘 지배층으로서 전쟁을 담당하는 특권적 전사집단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초기 고구려의 경우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삼국지》고구려전에 의

^{49)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東沃沮.

^{50)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2년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서천왕 11년

^{51) 《}三國史記》 권 17, 高句麗本紀 5, 동천왕 20년.

^{52)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하면 고구려의 大家는 농사를 짓지 않는 좌식자로서 그 수가 만여 구이고, 하호는 멀리서 식량과 어염을 지고 운반·공급하는 노역을 하였다.53) 즉 생 산계층으로서 하호의 사회적 처지는 부여의 하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 가 만여 구를 곧 전사집단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 이 대가들은 평시에는 하호의 지배자로서 생산물을 수취하였으며, 전쟁시에는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의 성과물을 분배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4세기에 들어 나부체제가 해체되고 왕권에 의한 집권력이 강화되면서 제가들이 통솔하는 나부병들도 점차 왕권 아래의 군사조직 내로 편제되었다. 아울러 대외정복활동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소국 단위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세력이나 백제 등과 대결하는 국가적 규모의 전쟁이 치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소규모 전사집단에 의존하는 초기 형태는 지양되고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병력 동원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반민의 동원은 役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광개토왕릉비〉에 전국적으로 수묘인을 정발한 사례를 보면, 일반민을 대상으로 한 군역의 정발 역시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추측된다. 고국원왕대전연의 침입시에 5만 군을 동원한 사실이나, 광개토왕대 영락 10년(400)의 신라구원전과 영락 17년의 전투에서 각각 步騎 5만 군을 동원한 사례는54) 일반민에 대한 군사 동원체계가 일정하게 갖추어져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군사조직이 국가적 기반을 갖게 되면서 중앙권력에 의한 군사동원이나 편제조직도 일원적으로 정비되었으리라 생각되나,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王幢'・'官軍'이란 표현에서 최고 군통수권자로서 왕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군사조직의 공적 성격이 두드러졌음을 집작할 수 있다.

고구려 후기의 군사조직은 중앙 군사조직과 지방 군사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 군사조직으로는 수도의 5部 조직을 들 수 있다. 본래 수도의 5부는 행정조직이 군관구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각 부에는 일정 수

^{53)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54)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12년.

[〈]廣開土王陵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12~14\.

의 군사가 배치되어 중앙군으로서 수도의 방위 임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溫達이 소속되어 수렵에 참가한 5부병이나,550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킬 때 동원한 부병이 이에 해당한다.560

중앙군의 무관직을 보면, 최고위급 무관으로는 위두대형 이상의 관등이 임명되는 大模達이 있는데 일명 大幢主 또는 莫何邏繡支라고 하였다. 대모달은 당의 衛將軍에 비견되는 것으로 보아 궁중숙위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대모달아래는 대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임명되는 末客이 있어 병사 1천 명을 통솔하였다.57) 그리고 말객 아래에는 幢主가 있어 군사 1백 명을 거느렀던 것으로 추측된다.58) 이를 5부 조직과 관련시켜 보면, 각 부에는 1천 명의 군사가 배치되어 말객이 지휘하고 이들 5부의 중앙군을 대모달이 총괄 지휘한 것으로 짐작된다.59)

한편〈泉男産墓誌〉를 보면 남산은 21세에 대형으로서 中裏大活을 역임하고 23세에 위두대형에 올랐다가 다시 中軍主活이 되었다. 중군주활은 무관직임이 분명하고, 중리대활도 주활 휘하의 무관직일 것이다. 아마도 主活一大活은 대모달—말객과 동일한 관직이거나 그에 비견되는 무관직으로 추정된다.60)

지방 군사조직은 지방 행정조직과 하나의 체계로 짜여졌다. 즉 지방관은 해당지역 지방군을 통솔하는 역할을 동시에 가졌다. 당과의 전쟁에서 고구려군을 지휘하였던 高延壽와 高惠眞의 관직은 최상위 지방관인 褥薩이었다.61)

^{55)《}三國史記》 권 45, 列傳 5, 溫達.

^{56) 《}三國史記》 권 49, 列傳 9, 蓋蘇文.

^{57)《}翰苑》高麗.

^{58) 〈}中原高句麗碑〉에는 "新羅土內幢主 下部 拔位使者"의 존재가 보이는데, 명칭상으로 大模達(大幢主)과 연결된다. 이 당주의 관등은 발위사자로서 7세기의 관등 조직에서는 大兄 아래의 관등이기 때문에, 당주를 대형 이상의 관등이 취임하는 末客보다 하위의 무관으로 인정해도 무리는 없다. 또 당주가 대략 100人을 거느렀을 것이라는 점은《魏書》권 103, 蠕蠕傳의 "처음으로 軍法을 세우는데 1천 인을 軍이라 하여 將 1인을 두고, 1백 인을 幢이라하여 帥 1인을 둔다"라는 기사가 참고된다.

⁵⁹⁾ 참고로 백제의 5부병을 보면 각 부에 500명의 군사가 배치되어 달솔의 관등을 가진 자가 지휘하였다(《周書》권 49. 列傳 41. 異域 上, 百濟).

⁶⁰⁾ 林起煥, 앞의 책(1995), 107쪽.

^{61) 《}冊府元龜》에는 高延壽 등의 관직을 軍主로 기록하고 있는데, 褥薩과 군주가

또 무관명인 말객의 다른 이름은 郡頭인데, 이는 군의 지방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최하위 지방관인 婁肖와 百頭도 무관직인 幢主와 대응시켜 볼 수 있다.62) 즉 고구려 후기의 지방 행정조직은 그대로 지방군의 편제 조직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래 城은 군사적 방위시설물로서 이러한 성을 행정단위로 편제할 때에는 자연 지방통치제의 군사적 성격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수·당과의 전쟁 과정에서 보듯이, 고구려가 성단위의 개별 방어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수하기 때문에, 지방 행정조직이 군사조직과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방관이 군사권까지 장악함으로써 갖게되는 강대한 권한으로 인해,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독립적인 지방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정변을 일으킨 연개소문이 자신에게 반발한 안시성주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63) 이는 고구려 지방통치제가 갖는 군사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2) 군사훈련과 병종

고구려 군사훈련의 대표적인 제도는 수렵행사였다. 초기부터 고구려왕은 잦은 수렵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군사적 능력도 함양하고 군사훈련도 겸하였다. 유목 수렵문화의 전통과 대외군사활동이 활발하였던 고구려사회에 있어서 군사적 능력은 왕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는 시조 朱蒙의 이름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수렵에서 잡은 동물을 희생으로 바치고 하늘과 산천의神에 대한 제사를 지냄으로써, 수렵은 종교의례적인 기능도 동시에 가졌다.64)

평양천도 후에는 국가적 수렵행사가 봄・가을로 정례화되었다.65) 봄에는

동일 관직이던가, 褥薩이 軍主를 겸직한 것으로 짐작된다.

⁶²⁾ 百頭는 어의상 백명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幢主도 100人 단위의 幢을 지휘한 무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63) 《}新唐書》 권 220, 列傳 145, 高麗.

⁶⁴⁾ 수렵에 대해서는 金瑛河, 앞의 글, 16~26쪽 참조.

^{65) 《}隋書》 권81, 列傳46, 高麗.

매년 3월 3일에 수렵행사가 열려 중앙군인 5부병들의 군사훈련을 겸하였다. 또 수렵행사는 溫達의 예에서 보듯이 무예가 뛰어난 자를 선발하는 인재 등용의 통로로도 기능하였다.66) 이러한 국가적 행사 이외에도 고구려 귀족들은 평소 수렵을 즐겨 이를 통해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마하였다. 이는 고분벽화에 많이 보이는 수렵도에서 엿볼 수 있다.

미성년자의 교육기관인 局堂도 군사훈련의 중요한 장이었다. 평민들의 자제들은 이 곳에서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혔다.67) 또 매년초에는 대동강에서 왕의 관전 속에 두 패로 나뉘어 石戰행사를 벌이기도 하였다.68)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수렵도를 비롯하여 씨름도와 手搏圖·궁사도·전투도 등이자주 그려지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상무적 기풍이 융성하였음을 알 수있다.

본격적인 군사훈련으로는 열병과 행렬을 실시하였다. 열병은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 대신들을 불러모아 놓고 평양성 남쪽에서 사열을 한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⁵⁹⁾ 또 고분벽화의 행렬도에서는 당시 군대의 조직과 병종을 엿볼 수 있다.

고구려 군사의 병종은 크게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고, 육군은 다시 기병과 보병으로 나뉜다. 안악 3호분이나 약수리고분의 행렬도를 보면, 행렬의 좌우 에 기병이 서고 그 안으로 보병이 열을 짓고 있으며, 보병의 수가 기병보다 많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실제 전투에서 기병과 보병은 합동작전을 하였을 것이고, 수적으로는 보병이 우세하나 전투의 주력은 기병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군사의 무장도 기병과 보병이 달랐다. 기병의 주무기는 궁시·긴창·칼이었으며, 찰갑과 투구로 온몸을 무장하였다. 또 말을 찰갑으로 무장시키기도 하였다. 보병은 궁시·칼·짧은창·도끼·갈고리 등을 주무기로 하고, 투구와 단갑으로 무장한 병사와 갑옷없이 무기만 지닌 병사로 이루어진다.70) 이

^{66)《}三國史記》권 45, 列傳 5, 溫達.

^{67)《}舊唐書》 권 199 下, 列傳 149, 高麗.

^{68) 《}隋書》 권 81, 列傳 46, 高麗.

^{69) 《}三國史記》 권 49, 列傳 9, 蓋蘇文.

⁷⁰⁾ 고구려의 무장에 대해서는 金基雄, 〈武器와 馬具〉(《韓國史論》 15, 國史編纂委

러한 모습은 고분의 출토품이나 고분벽화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기병과 보병, 그리고 보병 내에서의 무장의 차이는 곧 신분이나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고구려군의 주력은 육군이었으나 수군도 상당히 강력하였다. 본격적인 수군의 활동은 고구려가 낙랑군지역을 차지한 후로서, 아마도 이 지역의 해상세력을 기반으로 수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광개토왕 영락 6년(396)의 백제 정벌전에서는 수군을 동원하여 한성을 공격한 바 있으며, 후기에는 황해 연안로를 장악하여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방해로 사신을보낼 수 없다고 당에 탄원할 정도로 강성하였다.71)

3) 성곽시설

고구려의 성곽은 크게 平地城과 山城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평지성은 평지에 축조되어 평상시에 지배층이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으며, 산성은 험준한 지세를 이용하여 축조되어 외적의 침입시에 주위의 주민이 入居하여 항쟁하는 방어성으로서의 기능이 위주였다. 이외에 교통로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협곡에 쌓은 차단성이나 높은 산정에 설치되어 군사적 조망과 봉수대의 기능을 하는 城堡도 산성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고구려의 평지성은 그다지 많지 않아 환인의 下 古城子城, 집안의 集安縣城, 평양의 安鶴宮城 등 도성과 遼東城이 대표적이 며, 그외 대부분의 성은 산성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성곽은 산성으로 특징지 울 수 있다.

고구려의 산성은 험준한 자연 지세를 이용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 그 형태가 일정치 않으나, 크게 포곡식 산성과 테뫼식 산성으로 구분된 다. 포곡식 산성은 계곡을 성안에 끼고 산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아 3면은 높

員會, 1986), 39~61쪽 및 전주농, 〈고구려 시기의 무기와 무장〉 1·2(《문화유 산》 1958-1) 참조.

^{71)《}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류왕 9년. 고구려의 해상활동은 尹明喆,《高句麗 海洋交涉史 研究》(成均館大 博士學位論 文, 1993) 참조.

고 한 면이 낮은 형태가 많으며 대체로 규모가 크다. 테뫼식 산성은 산정상부를 둘러싸고 성벽을 두른 것으로 규모가 작고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이 양자를 혼합한 형태도 있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고구려의 도성은 평지성과 산성이 하나의 세트로 이 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고구려의 최초의 수도인 환인에는 하고성자성과 五女 山城, 두번째 수도인 집안에는 집안현성과 山城子山城, 그리고 장수왕대에 천도한 평양에는 大城山城과 안학궁성이 산성과 평지성의 대응관계를 이루 고 있다.72) 그리고 평워왕대에 축조한 평양의 長安城은 아예 산성과 평지성 을 결합한 형태로 축조되었다. 따라서 왕과 귀족들은 평상시에는 평지성에 거주하다가, 위급시에 주민과 더불어 산성으로 들어가 외적을 방어하였다. 환인현의 동북쪽 혼강 북안에 자리잡은 오녀산성은 서쪽과 남쪽은 천연의 절벽이고 산의 정상은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평탄하며 동쪽과 동북쪽의 경 사면 산허리에 돌로 축성이 되어 있다. 성의 둘레는 약 2,600m에 달하며 축 성의 형태로 보아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성이다.73) 오녀산성은 험준한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방어에 적당할 지 모르나, 일상생활의 거주지 로서는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곳에서 서쪽으로 십여리 쯤에 위치한 하고성자성이 평지성으로서 역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고성자 고성은 혼강가의 평지에 축조된 토성으로 동벽은 강물에 의해 유실되어 현 재 600여 m가 남아 있다. 이 성은 한대에 축조된 것으로 고구려 건국 후에 계속해서 도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74)

집안의 고구려 도성은 평지성인 집안현성과 산성인 산성자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는 국내시대의 도성으로 國內城과 丸都城이 나타나는데,⁷⁵⁾ 이 중 집안현성이 국내성에, 산성자산성이 환도성에 비정되고 있다.⁷⁶⁾

⁷²⁾ 車勇杰,〈高句麗 前期의 都城〉(《國史館論叢》48, 國史編纂委員會, 1993), 6~7 圣

⁷³⁾ 車勇杰, 위의 글, 6쪽.

⁷⁴⁾ 魏存成,〈高句麗 初·中期的都城〉(《北方文物》1985-2, 29\.

^{75)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산상왕 2년 2월(丸都城) 및 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12년 2월(國內城).

집안현성은 장방형의 석성으로 성의 둘레는 2,800여 m이고, 성의 모서리에는 각루가 있으며 성벽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군데군데 치성이 설치되었다. 성문은 6개로 모두 옹성을 갖추고 있다.77) 산성자산성은 집안현성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통구하를 옆에 끼고 있다.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은 지형으로 병풍을 두른 듯한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군데 군데 돌로 성벽을 쌓은 전형적인 포곡식 산성이다. 성의 둘레는 약 7km에 달하며 남쪽의 성문은 옹성으로 되어있다. 성안에는 궁전지와 점장대와 병사들의 건물지가 남아 있다.78)

고구려의 후기 수도인 평양에는 다수의 성터가 남아 있는데, 그중 청암동 토성은 고국원왕대의 평양성으로 추정되며,79) 장수왕 15년(427)에 천도한 평양성은 대성산성과 안학궁성이다. 대성산성은 둘레가 7km가 넘는 대규모 포곡식 산성으로, 성벽은 주로 안팎으로 돌을 쌓고 그 안에 흙과 돌을 다쳐 넣은 내외겹축방식으로 축조되었다. 남문은 성벽에서 20m 정도 돌출시켜 설치한 독특한 구조이며, 소문봉의 성문은 성벽을 어긋나게하여 옹성의 형태를 취하였다. 65개의 치성의 흔적과 3개의 각루터가 확인되었으며, 성안에는 20개의 기와건물지와 창고ㆍ병영시설도 확인되었다.80)

안학궁성은 둘레가 2,488m의 방형 토성으로 넓이는 38만㎡에 달한다. 성 벽은 돌과 흙을 섞어서 쌓았고, 성벽 밑부분은 일정 높이까지 돌로 쌓고 흙 과 돌을 다져 넣었다. 성벽의 네 모서리에는 각루를 설치하였고, 동서쪽 성 벽 밖에는 해자를 둘렀다. 궁성안에는 52채의 궁전터와 31채의 회랑터가 확 인되는데 5개의 건축군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 동산과 연못이 인공적으로

⁷⁶⁾ 국내성과 환도성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견해가 있었으나, 최근 중국에서의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성=집안현성, 환도성=산성자산성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이다(吉林省考古研究室·集安縣博物館,〈集安高句麗考古的新收穫〉,《文物》1984-1).

⁷⁷⁾ 車勇杰, 앞의 글, 19~20쪽.

⁷⁸⁾ 車勇杰, 위의 글, 15~17苓. 李殿福,〈高句麗丸都山城〉(《文物》1982-6).

⁷⁹⁾ 閔德植、〈故國原王代 平壤城의 位置에 관한 試考〉(《龍巖車文燮博士華甲紀念論 叢》, 1989), 127쪽,

⁸⁰⁾ 閔德植,〈高句麗의 中期都城〉(《韓國史論》19, 國史編纂委員會, 1989), 112~131 等.

축조되었다.81)

평원왕 28년(586)에 移居한 장안성은 둘레가 23km, 성안의 면적이 12km'에 이르는 고구려 최대의 성으로 산성과 평지성을 결합한 형태이다. 내성・북성・중성・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벽은 지형에 따라 외벽쌓기와 내외겹쌓기방식을 혼용하였고, 옹성은 반원형으로 축조되었다. 일부 구간에는 치성이 설치되었고, 대동강을 천연의 해자로 이용하였다. 평지성인 외성은 일정한 구획을 갖춘 계획적인 시가지를 형성하였으며, 내성은 궁성으로 이용되었다.82)

고구려의 지방의 성은 그 영역의 확대과정에 짝하여 축조되었다. 초기에 축조된 성으로는 환인과 집안의 도성을 중심으로 수도를 방어하기 위하여 각 교통로의 요충지에 축조된 黑溝山城, 覇王朝山城, 羅通山城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마장과 망파령에는 차단성이 설치되었다.⁸³⁾

4세기초 무순에 신성을 축조한 후84) 요동으로 진출하고, 광개토왕·장수왕대에 요동을 장악한 이후에는 요동지역에 행정적 거점과 교통로상의 요충지에 수많은 성을 구축하였다. 특히 요하평원과 산악지대의 접경지대에는 각교통로의 초입에 신성·요동성·개모성·백암성·안시성·건안성·비사성 등을 축조하여 길목을 제압하였다.85) 또 군사상 중요한 요충지의 주위에는 소규모성을 배치하여 서로 긴밀한 연결 속에 방어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

⁸¹⁾ 閔德植, 위의 글, 77~111쪽.

채희국,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⁸²⁾ 閱德植、〈高句麗의 後期都城〉(《韓國史論》19, 國史編纂委員會, 1989), 159~206 等.

⁸³⁾ 方起東,〈吉林輯安高句麗覇王朝山城〉(《考古》1962-11).

撫順市博物館 新賓縣文化局、〈遼寧省新賓縣 黑溝高句麗早期山城〉(《文物》1985-2). 吉林省文物工作隊、〈高句麗羅通山城調査簡報〉(《文物》1985-2).

崔茂藏 譯,《高句麗・渤海文化》(集文堂, 1985).

李殿福、《中國內의 高句麗遺蹟》(車勇杰・金仁經 譯, 學研文化社, 1994), 40~46쪽.

^{84)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5년.

⁸⁵⁾ 고구려의 중요 성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비정된다.

현도성=지금의 遼寧省 撫順市 勞動公園山城, 신성=지금의 요녕성 撫順 高爾山城, 건안성=지금의 요녕성 蓋縣 高麗城山山城, 비사성=지금의 요녕성 金縣 大黑山山城, 개모성=지금의 요녕성 瀋陽市 塔山山城, 백암성=지금의 요녕성 燈塔縣 燕州城, 안시성=요녕성 海城市 英城子村 英城子山城.

였다. 예컨대 요동지역을 관장하는 욕살이 파견된 오골성(지금의 요령성 봉성 현 봉황성)은 주위에 10여 성 이상의 소성이 배치된 위성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86)

한편 미천왕대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고 한반도 서북부 일대를 장악한 후에는 이 지역에도 성의 축조가 활발하였다. 4세기 초·중엽에는 황해남도 신원군의 장수산성이 축조되었고,87) 점차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광개토왕대에는 國南에 7城, 國東에 6城을 축성하였다.88) 그 후 장수왕대의 평양천도에 따라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남포의 동진성·황룡산성·청룡산성, 서흥의 대현산성, 평산의 태백산성, 봉산의 휴류산성·태봉산성 등 십수성이 축조되어 위성방어망을 구축하였다.89) 그리고 장수왕·문자왕대에고구려의 남쪽 영역은 죽령·조령에서 남양만 일대에 이르렀는데, 충북 영춘에 있는 온달산성은 테뫼식 산성으로 고구려 산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다음 성곽시설에 대하여 살펴보자.90) 성벽을 축조한 재료로는 석축이 기본이며, 그외 토축과 토석혼축이 있다. 석축 성벽의 축조방식을 보면, 장방형 또는 장방형의 4각추모양으로 돌을 다듬어 쌓아 올리되, 기초 부분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5~10단 정도는 계단식으로 안으로 들여쌓고 그 위에 수직으로 성벽을 구축하였다. 산성의 경우는 경사진 곳에 성벽을 축조하기 때문에 성벽의 바깥쪽은 다듬은 돌로 쌓고 안쪽은 돌과 흙을 다져넣은 외벽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계곡이나 중요한 부분은 성벽 안팎을 모두 돌로 쌓아 올린 겹 벽형식으로 축조하였다. 평지성의 경우는 성벽 전체를 겹벽으로 쌓았다.

토축성은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요령성 해성의 영성자산성(안시성), 심양의 탑산산성(개모성)은 흙을 층층히 다져 쌓았고, 무순의 고이산성(신성), 길림의

⁸⁶⁾ 손영종, 앞의 책, 341쪽. 그런데 북한학계에서는 鳳凰城을 북평양으로 보고, 오 골성은 遼寧省 岫岩 일대에 비정하고 있다.

⁸⁷⁾ 안병찬, 〈장수산일대의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1990-2). 최승택, 〈장수산성의 축조년대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1991-3).

^{88)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광개토왕 3년 8월 · 18년 7월.

⁸⁹⁾ 손영종, 앞의 책, 332~334쪽.

⁹⁰⁾ 성곽시설에 대해서는 《고구려문화》(사회과학출판사, 1975), 46~61쪽 참조.

용담산성은 흙과 돌을 섞어서 쌓았다. 개현의 고려성산산성(건안성)은 토축과 석축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축하였다.91)

성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성벽 시설물로는 성문·옹성·치·여장·각루 등이 설치되고, 성안에는 장대와 우물·봉수대·창고·병영 등이 설치되었다.

성문은 성의 안밖을 연결하는 통로로, 포곡식 산성의 경우는 주로 골짜기를 따라 성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었다. 성문은 적의 공격이 집중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옹성이나 치 등을 갖추고 있다. 옹성의 형태는 다양한데, 오녀산성이나 국내성은 성벽을 어긋나게 하여 옹성의기능을 하게한 형태이고, 흑구산성은 10m 거리로 이중의 성벽을 쌓아 옹성을 구축하였다. 보다 많이 사용된 옹성은 성벽을 성문 부근에서 방형 또는 반원형으로 성안으로 오므라들게 쌓은 형태로서, 산성자산성의 남문 옹성이대표적이다. 중후기의 성에서는 성문 밖을 반원형으로 감싼 옹성을 많이 볼수 있다. 또 산능선의 구석진 곳에는 소규모 암문을 설치하여 비밀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는 성벽과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좌우에서 공격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성벽 밖으로 돌출시켜 설치하였다. 각루(망루)는 성벽의 모서리 부분에 설치되어 일종의 보조 전투지휘처의 구실을 하였다. 성벽에는 女檣을 설치하기도하는데 병사들이 몸을 숨기고 성에 접근하는 적들을 사격할 때 쓰는 시설이다. 또 평지성의 경우에는 성벽 밖에 큰 도랑인 해자를 파고 물을 채우기도하였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평남 태천의 농오리산성이나 요령성 莊河縣의 城山山城의 경우처럼 본성의 외곽에 자연 지세를 이용하여 일종의 나성을 쌓아 방어력을 높인 경우도 볼 수 있다.

성안 시설물로는 성 안팎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전투지휘처인 장대를 설치하였고, 식수원인 연못과 우물을 갖추고 있다. 또 평탄한 곳에는 병영과 식량창고 등의 시설물을 두었고, 성의 높은 곳에는 봉수대를 설치한 곳도 있 다. 또 대규모 포곡식 산성의 경우 성안에 일정한 거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관청이나 지방관의 처소로 사용되는 건물시설을 갖추었을 것으로

⁹¹⁾ 李殿福, 앞의 책.

추정된다. 예컨대 집안의 산성자산성의 경우는 궁전지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산성은 험준한 지세를 이용하고 다양한 방어 시설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략이 쉽지 않아, 당의 침략시에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고, 성을 잘지키기 때문에 졸연히 항복시킬 수 없다"고 실토하고 있다.92)

〈林起煥〉

3. 경제구조

1) 토지제도

고구려는 농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하여 성립되고 운영된 나라이다. 따라서 토지를 둘러싸고 형성된 인간들간의 제관계는 고구려사회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이룬다. 그런데 토지제도가 갖는 이같 은 비중과는 달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토지제도 관계자료는 극히 적다.

고구려가 발생한 압록강 중류지역은 청동기문화기에서부터 상당수의 주민들이 모여 정착문화를 이루고 살았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국가가 성립되기이전부터 주민들에 의하여 토지가 경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국이 역동적으로 형성되어 가던 기원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이 지역에는 집단적인 주민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뒤에는 部로 전화하는 那가 여전히 주민들의 생활공동체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던 나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해가는 시기에 있어서 토지를 둘러싼 계급간의 갈등은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족단위로 이동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에서¹⁾ 나안의 성원간의 토지소유의 문제는 계급적 대결로 나

^{92) 《}三國史記》권 22, 高句麗本紀 10, 보장왕 6년.

^{1) 《}三國史記》 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5년 4월 및 민중왕 4년 10월.

타날 만큼 첨예하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나의 위치나 그것이 이 지역에 터잡은 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三國史記》에는 琉璃明王 37년(18)에 물에 빠져죽은 왕자의 시신을 찾아낸 沸流人 祭類에게 왕이 金 10근과 田 10경을 내린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국초의 일로 믿을 수 없는 기사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漢나라 玄兎郡의 지배를 일시 받았던 사실이 이 즈음에 있었으므로 고구려지역에도 중국과 같이 토지의 사유가 어느 정도 진행중이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런데 제수에게 10경의 토지를 주었다고 할 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었므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 및 경작권을 준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다. 현대의 관념으로 보아서는 점유 및 경작권을 주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토지의 매매가 아직 사회적인 관행이 되지 않았을 당시의 형편에서는, 이같은 점유 및 경작권은 공동체적인 절실한 필요나 족장의 특별한 조치에 의하여 그 보유 및 경작의 권리가 회수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후대의 소유권 못지 않은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고구려의 건국 초기, 아직도 那나 部의 독자성이 살아있어 공동체적 제약속에 국가가 운영되고 있던 상황에서 토지는 주민들간에 배타적이고 경쟁적으로 소유되는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만여 명의 많은 부여계인들이 부여내의 정치적 변화에 의하여 압록강유역으로 내려왔을 때 大武神王은 이들을 椽那部에 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왕을 뽑아 주었다고 한다.2)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려온 만여 명의 주민들을 한 지역에 정착케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들 주민들간에 토지소유 규모의 차등과 그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은 각 가정이나 집단의 노동력의 정도 등에 따라 대개는 유사한 정도의 토지를 분배받거나 자연히 점유·경작하는 상황으로 정착생활에 들어갔으리라 짐작된다.

^{2) 《}三國史記》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5년 7월.

이같이 토지의 소유가 아직 사회성원간의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음은 다른 사료들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의 대무신왕본기에 의하면 왕의 5년(22) 3월에 沸流部의 3인의 部長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죄목은 '다른 사람의 妻妾과 牛馬, 財貨를 마음대로 빼앗고 주지않으려 하면 매를 때린 데'있었다. 여기서 약탈의 대상은 처첩과 우마, 재화였음이 일단 주목된다. 그런데 이에 비해 약 2세기 뒤인 故國川王 12년(190) 9월에 일어난 유사한 사실에서는 이와는 약간 대비되는 점을 볼 수 있다.

역시 같은《삼국사기》의 고국천왕본기에 의하면 당시의 왕후의 친척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의 자녀와 田宅을 빼앗아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서 왕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 때에는 앞의 사실과는 달리 전택이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약 2세기에 걸친 국가의 발달, 농업의 발전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토지의 중요성이 그만큼 증대된 사실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사적 소유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이제는 공동체적인 유대가 개인들의 생계의 면에서는 거의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토지소유에 있어 국초의 자연적인 점유나 성원간의 유사한 양의 분점 등의 상황이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변화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의 국가체의 형성과 발전도 이같은 구성원간의 계급의 형성과정에 힘입은 바 있을 것이며 국가의 발전과정이계급의 분화를 북돈았을 것도 물론이다.

이같은 사실은 고국천왕 16년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삼국사기》의 고국천왕본기에 의하면 고국천왕이 10월 어느 날에 사냥을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길에서 앉아 울고있는 이를 만나게 되었다. 왕이 왜 울고 있느냐고 문자 그는 "제가 빈궁하여 늘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해 왔는데 금년에는 흉년이 들어 품팔 곳이 없어 식량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이같이 울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 길에서 울고있는 농민은 토지의 점유 및소유를 둘러싼 경쟁에서 몰락해 가는 빈민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자들은 예외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사건에 의하여 백성들에게 봄에 국가의 곡식을 꾸어주고 추수후에 받아들이는 賑貸法이 시행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민에 대한 구휼이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그 만큼 당시에 공동체적 유대가 해체되어 가면서주민들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세기 이전의 사실을 전하고 있는《三國志》東夷傳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大家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坐食者가 만여 구이며 下戶들이 멀리서 식량과 생선·소금을 져다 공급한다"라고 하였는데, 지배층과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하호라는 가난한 일반민들이 대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주민내의 경제 사회적인 분화는 3세기말의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삼국사기》의 美川王本紀에 의하면 미천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 그를 죽이려 하던 당시의 왕이었던 烽上王의 추적을 피하여 신분을 감추고 머슴살이와 소금장수를 하며 지낸 사실이 있다. 곧 그가 水室村 사람 陰牟의 집에서 1년간 머슴살이를 하며 힘든 생활을 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음모는 일반민으로서 부자라고 볼 수 있는 자인데 이같은 이들도 사회적으로 존재한 것이며, 이에 반하여 머슴살이나 품팔이를 하며 생활을 유지하던 가난한 자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주민간의 사회 경제적 분화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던 당시의 형편에서는 필연적으로 주민들간에 토지소유의 차등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야기되었을 것이다.

이같은 토지의 점유 나아가 소유규모의 차등화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극히 점진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현상으로는 본래 가지고 있던 토지의 토질이나 주민들간의 농사기술의 차이, 우연한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경제력의 차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다 소 정치적인 배경에서 유래되는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고대국가의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군사나 하급 관리 혹은 귀족들의 家臣이 된 자들은 국가나 귀 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게 되고 이로부터 점차 가산을 축적해 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왕실 종친을 위시한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가 가능케

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이미 琉璃明王 11년(B.C. 9)에서부터 食邑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국초의 이 기사의 신빙성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新大王 2년(166) 및 8년, 東川王 20년(246) 그리고 봉상왕 2년(293)의 식읍 지급기사는 이 시기가 갖는 역사적 상황이나 전후 내용을 보아 마땅히 믿을 수 있다. 이같은 식읍의 지급은 기록에 남아 전하지 않고 있는 다른 귀족들에게도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식읍을받지 못하는 귀족들에게도 국가로부터의 다른 형태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을 것이다.

식읍은 토지로부터 국가가 받는 조세를 식읍주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는데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인민의 노동력 정발권까지도 받는 등 일종의 封地라고 할 수도 있어 단순한 토지제도로만 말하기는 적합치 않겠지만, 이러한 경제적 특권을 배경으로 하여 귀족들은 좋은 토지를 더욱 집적해 갔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내고 이지역의 기름진 토지가 고구려의 영토에 편입된 후, 더구나 장수왕 때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자료로 보아 토지에 관한한 국가권력에 의한 토지보유나 소유에 대한 전면적인 재지급 등의 국가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보인다. 뒤에서 보겠지만《隋書》고려전에 전해지고 있는 고구려의 조세내용으로 보면, 고구려인들의 세금액수는 빈부의 차이에 따라 3등급으로나누어져 있지만 등급간의 차액이 극히 적고 전체 세액은 당시의 수준에서는 적지 않은 각호당 곡 5.5석~6석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량에 근거하여 이를 주민들로부터 수취할 수 있으려면 주민 일반에게 균전법 등과 유사한 토지의 국가적인 지급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경우도있다.3) 이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구려에서 전면적인 토지의 지급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시도되었다는 근거를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그같은 거의 균등한 세액의 인두세에 가까운 조세수취는 일반민들

³⁾ 白南雲,《朝鮮社會經濟史》(改造社, 1933), 211쪽.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4) 즉 세금을 부담하는 백성들의 대다수는 경제력의 차이가 심하지 않은 자영소농민이었던 데에서 그같은 조세 수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귀족들에 의한 토지의 집적이 크게 진행되어 대토지 소유와 경작이 있었겠지만 사회에는 여전히 세금을 내고 부역을 지며 병역을 담당하는 다수의 자영소농민층이 공민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설화적 성격이 강하지만 《삼국사기》 온달전의 이야기 속에서 시집 온 평강공주가 궁궐에서 가지고 나온 금팔찌를 팔아 田宅·奴婢·牛馬 등을 샀다는 사실에서도 민간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이동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수 있다. 국가는 사적인 토지의 소유권에는 간섭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토지를 사고 파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토지가 어느 시기에 이미 재산의 중요한 요소로서 매매가 되기도 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조세제에 적용되고 있는 고구려 후기 3등호제도 이같은 토지 소유량의 차등화와 직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같은 행위가 빈번하거나 소유권을 둘러싼 충돌은 많지 않은 상태였던지 현전하는 자료에서는 이 이상의 자료를 찾아 볼수 없다.

고구려의 토지제는 전체적으로 보아 那나 部단계 이래의 주민들에 의한점유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었으며 농업이 발달하고 사적 소유가 더욱 진전되면서는 경제력 혹은 권력 등의 차등에 따라 점차 사회성원간의 소유의 이동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민들의 다수는 여전히 자영소농민으로서 소토지를 소유·경영하여 그를 바탕으로 세금을 내고 군역을 부담하는 국가의공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귀족들은 국가의 특혜와 이를 통한 경제력의 축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고 하호나 노비 등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토지를 경영하고 큰 부를 형성해 갔다. 토지의 소유권은 후대로 갈수록 국가의보장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다고 보이는데 민간에서도 토지가 때때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⁴⁾ 김기홍, 〈三國時代 稅制의 성격〉(《國史館論叢》35, 國史編纂委員會, 1992), 121 쪽.

2) 조세제도

고구려의 국가구조가 체제를 갖추어가면서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도 모습을 갖추어 갔다. 국초의 조세제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는 《삼국지》동이전에 전하는 내용들이 있다. 3세기 이전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이 기사들에 의하면 고구려는 피정복집단인 동옥저인들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 특산물의 정발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동이전의 기록들에 의하면 본래의 고구려인들 끼리도 계급의 분화에 따라 지배층은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가난한 下戶들이 농사를 지어 지배층들에게 곡식 등을 가져다 주어 먹고 살고 있는 사실이 있음을 전해 주고 있다. 이는 마치 지주와 소작농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하지만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일반 농민층인 하호들이 힘들여 농사를 지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실을 보여 주는 내용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는 물론 피지배층 일반에게는 부역의 정발이 있었고 특산물 등의 수취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같은 조세수취는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어진 삼국시대의 중·후반에는 보다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국가는 주민 일반에 대하여 주산업인 농업생산에 대하여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주민들의 노동력을 징발하여 국가의 공공사업이나 군사력에 충당했다. 아울러 가정의 수공업생산에 대하여도 일정액의 수취를 하고 특산물 등에 대하여도 세를 부과하였다. 이렇게 보면 전근대 동양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던 租‧調‧役 혹은 租‧庸‧調에가까운 조세제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같은 점을 전제로하여 조세의 수취내용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조세제도의 실상을 알아보도록하겠다.

(1) 조(租)와 조(調)

고구려의 조세의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곧《周書》와 《隋書》의 高麗傳에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다. 賦稅는 絹, 布 및 粟으로 내는데 그 가진 바에 따르며, 빈부를 헤아려 차등 있게 내도록 한다(《周書》권 49, 列傳 46, 異域 高麗).

人은 布 5필과 穀 5석을 稅로 내며, 遊人은 3년에 1번 세를 내는데 10인이 細布 1필을 같이서 낸다. 戶마다 1석의 租를 내며, 차등호는 7두, 하등호는 5두를 낸다(《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高麗).

위의 두 내용을 통해 보면 노동력을 정발하는 부역을 제외한 고구려 후반의 조세수취의 대강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두 내용은 일견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듯도 하다.

《주서》에 전해지는 기록에는 《수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遊人 관련 조항은 전혀 없다. 이 조항이 없는 것 이외에도 《수서》의 기록에는 사람마다 매년 포 5필과 곡 5석을 낸다고 한데 비하여, 《주서》에는 견·포·속 중에서그 가진 바 즉 해당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물자로 세를 낸다고 되어 있어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나 우리 나라 고·중세의 수취에서는 가정의 수공물인 베와 농사의 산물인 곡식을 함께 세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더구나 고구려의 영토내에서 衣와 食생활을 지역의 산물로 자급하지 못할 만한 지역은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수서》의 기록에 따라 베와 곡물을 함께 세로 냈다고 보인다. 隋는 고구려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만큼 고구려의 국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에 노력했던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수나라는 고구려의 조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北周는 지리적으로도 우리의 삼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교관계도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점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수서》가 전해 주는 내용이 고구려 후반 수취제의 실상을 보다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서》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수취의 실상을 전해주고 있고, 그에 비하여 《주서》에서는 고구려 조세수취의 대강의 윤곽을 전해주고 있다고 보면 두 기록의 내용이 모순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북주(557~581)와 수(581~618)는 곧바로 이어진 중국의 왕조였으므로 이들 왕조가 있었던 시기의 고구려의

조세수취의 내용이 크게 다를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다.

《수서》고려전의 조세관련 조항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수취의 대상자가 人과 遊人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양자의 세액을 비교해 보면 인은 일반 백성임을 곧 알 수 있다. 매년 세금을 내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의 양으로 보아도 이들이 내는 세금이 국가 재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유인은 국가로부터 별도의 취급을 받고 있는 색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인들과는 달리곡식을 세로 내지 않고 있으며 1년마다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3년 마다 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10명이 細布 1필을 내고 있다. 세포는가는 실로 짠 고운 베를 말하는 것인데 이 수공품은 일반 백성들이 내는 5필의 포와는 다른 특별한 베이다.

유인은 놀고 먹는 자, 여행객 등의 사전적인 뜻을 가진다. 그런데 놀고 먹는 자라는 뜻 속에는 빈둥거리는 자라는 뜻도 있는 한편 재산이 없어 일정한 산업이 없이 사는 자라는 의미를 갖는 듯도 하다. 이같은 점에서 이 유인을 고구려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으로 존재하게 된 빈민층을 가리킨다고보는 견해가 제시되고5) 이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져 온 바 있다.

그런데 유인을 빈민으로 보는 견해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고 구려라는 고대국가가 일반민에게는 곡 5석과 포 5필이라는 다소 과도하게 보이는 세액을 부담시키면서 빈민들에게는 3년에 한번 10명당 고운베 1필을 부담시켰을까 하는 점이다. 고대왕국이 이같이 빈민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정책을 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는 고대왕국의 성격상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부담하는 세액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사회적 존재가 같은 사회의 성원내에서 순전히 경제적인 분화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볼 때, 인과 빈민의 중간 단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의문이아닐 수 없다. 여기서 이들은 신분 혹은 종족적으로 분별되었던 성원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⁵⁾ 白南雲, 앞의 책 , 191쪽.

삼국시대 중·후반의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대국으로서 다양한 종족에 의하여 주민이 구성되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에는 본래의 5부민뿐만 아니라 동옥저나 부여계 그리고 韓族 및 거란·말갈 등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 거란과 말갈을 제외한 종족들은 종족적으로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이미 같은 고구려인으로 되어져 갔다.

이들에 비하여 말갈과 거란 특히 고구려내에 다수 살고 있던 말갈족은 종 족적 차이에서 쉽게 고구려인화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집단적인 생활을 유 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수나라나 백제, 신라에 대한 군사작전에 까 지도 독자적인 형태나 혹은 고구려군의 지휘하에 있더라도 나름의 군사체제 를 유지한 채 작전에 임하곤 하였다. 이들이 이같이 고구려내에서 여전히 별 도의 존재로 있었음은 국제적으로도 인지되어 隋文帝가 嬰陽王 8년(597)에 고구려에 보낸 외교문서에도 나타나 있는 실정이다.6)

그러므로 말갈은 물론 고구려의 세력하에 있었던 일부 거란족들이, 고구려 내에서 종속된 종족으로서 다소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살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들은 고구려인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데 비하여 유목이나 반농반목 상태에 있었으며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집단생활을 여전히유지하고 있었다. 이같이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양태와 문화를 영위하면서 세력집단으로서 존재한 만큼 당시의 민감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군사력으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깰 수도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로서는 이들을 달래서 고구려의 군사력의 일원으로 남도록 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존립 기반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고구려의 부용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는 그들로 하여금 종속된 집단으로서 고구려에 대하여 충성을 표시토 록 하기도 했다. 국제적인 세력대결이라는 현실적인 면과 고구려와 이들 집

^{6) 《}隋書》 권 81, 列傳 46, 東夷 高麗.

단간의 주종관계의 명분이 만족되는 선에서 양자의 관계는 정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이들 부용집단들이 고구려에 납부하는 공물적인 성격의 조세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다시 《수서》의 遊人관련 조세 조항을 보도록 하자. 유인이 3년마다 세를 내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이것은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였고 불교나 율령을 전해준 바 있는 중국 前秦의 대외관계에서도 보이는 바부용집단이 종주국에 3년에 한번씩 공물을 바치고 있는 사실과 같은 내용일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10인당 세포 1필을 낸다는 사실도 유인이 말갈 등 부용집단일 가능성을 높여 준다. 3년에 10인이 1필의 포를 낸다는 것은 만약 유인이 빈민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한다. 빈민들의 정착성은 매우 약할 것인데 빈민들을 3년마다 10명 단위로 수취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 효용이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말갈이나 거란 등은 집단적인 부락을 이루고고구려인들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것인 만큼 이들 집단적인주민들에 대하여 10명당 1필의 세포를 걷는다는 것은 매우 합당한 수취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세포란 가는 실로 짠 고운 베를 말하는데 이는 흔히 주종집단간의 공물로 사용된 사실이 있어 유인의 존재를 규명함에 큰 도움을 준다. 〈광개 토대왕릉비〉에 의하면 백제를 치고 백제왕의 항복을 받은 고구려군은 백제로부터 1천의 노비와 1천 필의 세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생활상이나 고구려와 이들 집단간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부용집단을 본래의 고구려인들과는 구분하여 유인이라고 할 만하다. 말갈이나 거란 등의 종족들이 유목이나 반농반목의 생활을 했던 만큼, 정착하여 농업을 주생업으로 한 일반 고구려인들을 인이라고 할 때 이들을 유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말갈 등의 부용집단은 본래의 고구려계 주민과는 달리 종족적으로 다르며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고구려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客的인 존재였던 만큼 이들을 주종족인 고구려인들과 구분하여 객족으로 보아 유인이라 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다종족국가인 고구려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며 고구려인으로서

거의 일체감을 갖고 있는 일반 주민들과, 유목이나 반농반목의 생활을 하면서 종래의 전통적인 집단생활을 하며 고구려에 부용되어 있는 말갈 등의 주민들에 대하여 구분을 둔 조세수취를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7)

이제 《수서》의 조세 조항의 말미에 보이는 戶租에 대하여 살펴 보자. 우선 주목되는 것은 6·7세기 고구려에 3등호제가 실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가 건국 이래 지속된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분화가 이 때에 이르러 3등호제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호조는 곡식 즉 조(좁쌀)로 각호의 재산의 등급에 따라 5두, 7두 그리고 1석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호조는 앞에서 본 유인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이었다. 이같은 점은 조세관련 조항의 전체 문맥에서 알 수 있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인들은 아직도 공동체적 성격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내에는 호등을 구분할 만한 경제적인 분화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에게는 고구려 정부의 직접적인 통치가 미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형편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3등호제를 편제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여경제적인 분화를 지속해 온 본래의 고구려 주민들에게서 3등호제는 나타날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 행정력의 체계화와 재정수요의 확대가 호등제의 제도화를 가능케 했음도 물론이다.

이같이 호조는 고구려의 일반민들에게 매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조항의 앞 부분에 나오는 매 인당 내고 있는 곡 5석과 포 5필과, 이 호조의 양을 비교하여 보면 두 세목의 비중은 물론 그것들의 출현의 선후를 알 수 있다. 호조의 세액은 사람마다 내는 세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다. 이것은 호조가 부수적인 세목인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호조는 고구려 후반에 와서 사회 경제적인 분화에 의하여 드러나게 된 3등호제를 기준으로 하여 수취되고 있는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이는 이 호조가 고구려의 후반기에 와서야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아울러 호등별 세액의 차이가 매우 적은 점도 이

⁷⁾ 이상 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金基與、〈6·7세기 高句麗의 租稅制度〉(《韓國史論》17, 서울大 國史學科, 1987), 5~30쪽.

제도의 출현이 오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삼국시대말의 발전상을 수렴하고 등장한 통일신라에서 9등호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점도 고구려의 3 등호제가 삼국시대 후반에 와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고구려의 4·5세기 경의 조세수취의 실상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3등호제에 의한 호조를 제외한, 인두세적인 매 인당 곡 5석과 포 5필에 가까운 세액이 주민 일반에게 재산의 차등이 문제되지 않은 채 부과되고 있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주민들간의 사회 경제적 분화가 지속되어 오고 있었지만 고구려 중반까지는 아직도 그 차이가 세제에 반영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고구려의 租와 調의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다. 즉 고구려에는 국가가 성립된 단계 이래 일반민들에게 농업의 생산물인 곡식 즉 조(좁쌀) 일정량과 각 가정의 수공물인 포 일정량을 현물로 징수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세목의 구분에 따른다면 곡물로 내는 세목은 租라고 할 수 있으며 포의 납부는 調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취는 적어도 고구려 중기까지는 그 형태가 지속되었다. 주민들간의 사회 경제적 분화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조세수취에 반영되는 것은 후기에 가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곡 5석과 포 5필을 내는 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男丁을 말할 것이다. 부가세인 호조가 호마다 매겨지고 있고 고구려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주체가 개별호였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이같이 많은 세액을 부담할 수 있는 존재는 호주인 남정일 것이다. 고구려의 조세가 갖고 있는 인두세적 성격은 공동체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던 지연 및 혈연적 공동체인 那를 기반으로 국가가 구성된 데서 연유되었을 것이며, 사회 경제적 분화의 점진성에서도 그러한 수취액이 상당기간 부과될 수 있었을 것이다.8)

후기에 이르면 국가의 재정 수요의 증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⁸⁾ 김기흥, 앞의 글(1992), 121쪽.

분화의 심화에 따라 3등호제에 의한 戶租가 종래의 인두세적 수취에 부가되게 되었다. 그러나 호조의 차액은 매우 적어 재산의 차등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는 상등호층의 양보가 미흡했던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후기에는 말갈이나 거란 등 고구려에 부용되어 국제적 세력대결에서 고구려에 큰 무력을 제공하고 있던 종족들에 대하여 상징적인 수취를하게 되었다. 이들이 바로 遊人이라 보이는 바,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속에서 이들이 가진 특수한 위치로 인하여 이같은 선처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2) 부 역

고구려의 주민들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다. 국가의 성립초에서부터 왕궁이나 성의 수축을 위하여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 을 것은 물론이다.

현전하는 몇몇 자료로 볼 때 국가적인 賦役은 성년 남자들에게 부과되었다고 보인다. 이 점은 백제나 신라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고구려의 경우구체적으로 부역 정발의 사례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에 여자들도 정발되고 있어 이 자료를 통해 고구려 나아가 삼국에서 남녀가 모두 국가의 부역에 정발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도 한다.

《삼국사기》의 봉상왕 9년 8월조에는 "왕이 국내 남녀 15세 이상자를 정발하여 궁실을 수리했다"고 되어 있다. 봉상왕본기의 이같은 내용은 같은책의 倉助利列傳에도 보이는 데 양 기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열전에는 "왕이 국내의 丁男 15세 이상자를 정발하여 궁실을 수리했다"고 되어 있다. 물론 열전보다는 본기의 내용이 보다 비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기의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고구려 나아가 삼국시대에 남녀가 모두 국가의 부역에 정발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 여겨진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10사례 정도의 삼국에서의 부역기사를 보면 남녀가 명기된 것은 오직 이 기사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봉상왕의 폭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히려 특수한 사례로 강조하여 전하고 있다고보인다.

물론 사소한 일이나 긴급한 상황 그리고 지방의 잡역에는 여성이 동원되기도 하였을 것이지만 국가적 동원이 필요한 부역에는 율령에 의하여 15세이상의 정남이 징발되었다고 보인다.9) 고구려말 최대의 공사인 千里長城을수축할 때 "남자는 역에 나가고 여자가 농사하였다"는 《三國遺事》寶藏奉老普德移庵조의 기사는 바로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는 이미 남녀의 역할이 가정이나 사회 나아가 국가적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던 수준의 단계였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남정들이 국가적인 역에 정발된 기간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고구려도 기본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던 만큼 농번기에는 부역 정발을 피했을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농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초봄이나 초가을 혹은 추수가 끝난 계절에 정발이 있었을 것인데, 백제나 신라의 경우를 참조해 보면약 2개월 정도 이내에 정발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국초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동원 가능한 15세 이상의 자를 모두 동원하여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공사에 임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국가의 체제가 잡혀가고 율령에 의한 통치가 행해지면서는 정발기간도 정해지고 모든 남정을 정발하는 양상은 시정되어 갔을 것이다. 공사수행의 경험이 축적되고 율령에 의하여 부역 정발기간도 규정되어졌던 만큼해당 공사에 필요한 노동량이 예측·산정되면서 필요한 인원만큼만 정발되게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나 우리의 후대의 부역 정발일수를 생각해볼 때, 1년 중에 정발되는 부역일수도 점차 줄어갔을 것으로 보인다.10)

부역에 동원되어 수행한 일은 성을 쌓거나 저수지의 제방을 쌓는 일, 궁궐을 수리하는 일, 그리고 도로를 닦는 일 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문헌으로 알 수 있지만, 고구려의 성벽에 새겨진 축성과 관련된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어 부역의 양상의 일부를 전해주고 있다.

⁹⁾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과학원출판사, 1957; 신서원, 1993), 246쪽

¹⁰⁾ 김기홍, 〈삼국시대의 역역(力役)〉(《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 사, 1991), 102~106쪽.

3) 산 업

(1) 농 업

고구려의 주산업은 백제나 신라 나아가 중국과 같이 농업이었다. 국초에 서부터 주거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오곡 농사에 적당한 땅'이 문제되고 있으며¹¹⁾ 정착농업은 계속 확대·보급되는 추세였다.

국초에 농업은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충분치 않은 수준이었다. 《삼국지》 동이전을 위시한 고구려 전반기의 사정을 전하는 중국의 사서류들을 보면 고구려의 식량사정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의 발전과 대동강 및 한강유역 등 넓은 농업지대를 점차 확보해 가면서 식량문제는 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사는 논농사보다는 주로 밭농사를 지었다. 산간지방이 많았던 만큼 밭농사가 더욱 활발하게 되었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밭농사의 산물인조(좁쌀)가 세금을 내는 주곡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만주나 한반도의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던 콩농사가 행해졌을 것도 물론이다.

논농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다. 특히 4세기초 낙랑군과 대방군이 차지하고 있던 평양일대나 황해도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논농사의 비중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백제의 수도였던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부터 논농사의 비중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이리하여 벼가 점차 널리 재배되면서 귀족들은 물론 일반민들도 드물게 쌀을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농민들의 다수는 자신의 소규모 농토를 갖고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농사에 품을 팔아 생활에 보태기도 하였다. 고국천왕 16년(194) 왕이 사냥길에 나섰다가 만난, 길에 앉아 울고 있던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여 늘 남에게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12) 소수의 귀족들은 노비나자신에게 투탁한 농민들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11) 《}三國史記》권 13, 高句麗本紀 1, 유리명왕 21년 3월.

^{12)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고국천왕 16년 10월.

(2) 수공업

고구려의 수공업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 주민들의 각 가정에서 가족원의 생필품을 스스로 만들어 쓰기 위하여 행한 가내수공업이 하나이며, 전문적인 장인이 주로 국가나 귀족 나아가 사원에 소속되어 생필품이나 기타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우이다.

가내수공업은 모든 농가에서 이루어졌다. 삼을 심어서 이를 채취하여 삼 베를 짜는 일이나 누에를 쳐 명주를 짜는 일은 주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지역에서 많이 나는 섬유원료에 의하여 주부들은 실을 잣고 베를 짜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식구들의 의복을 마련하였다. 드물게는 남는 양의 베를 팔기도 하였을 것인데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국가적인 수공업으로는 각종 兵器의 제작이 크게 성했을 것이다.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기를 제작하는 일이 국가의 주관하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같은 병기의 제작은 그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국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을 것도 물론이다. 특히 漢의 鐵官이 설치되었던 平郭縣 등 주요 철산지가 있었던 요동지역을 점령한 이후 국가의 이 지역 철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히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13) 아울러 고구려의 철은 室章 등에도 수출되었다고 하는데14) 철이 무기나 생활 용기를 제작하는 원료로써 중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수준이 낮은 주변 종족들을 통치하거나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정에서도 철이나 중요 광물을 둘러싼 일련의 작업이 국가적 관리체계하에 이루어졌을 것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궁궐이나 관청, 사원 그리고 왕실이나 귀족의 무덤들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기와나 각종 자재들의 다수도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종이나 각종 소모품도 대개는 원료들이 생산되는지역에서 기술을 가진 주민들에 의하여 공물로서 생산케 하거나, 원료들을수집하여 국가에서 장인이나 노비들을 통하여 제작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다.

¹³⁾ 李龍範, 〈高句麗의 成長과 鐵〉(《白山學報》1, 1966), 88쪽.

^{14)《}隋書》 권 84, 列傳 49, 北狄 室韋. 《新唐書》 권 219, 列傳 144, 北狄 室韋.

농기구의 생산도 물론 활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농기구 중에서 가정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철제 농기구 등이 어떤 체계하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국가의 관리하에 장인들이 만들어 농민들이 사서 썼을 가능성도 있으며 각 지역의 장인들이 철광석이나 철괴를 구입하여 소규모 풀무를 이용하여 이를 녹여 각종 농기구를 생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상 업

수도를 위시한 주요 도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과 상인이 있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온달전에 의하면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토지와 노비를 비롯하여 각종 기물을 사도록 하였는데 이것들을 시장에서 산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일반민들의 말의 매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기르던 비루먹은 말을 내다 팔고 있었던 사실이 전한다. 온달전이 다소설화적인 내용이라 속단하기는 주저되지만, 고구려에 비하여 후발국인 신라에서도 수도와 지방에 시장이 개설되어 주민들간의 매매가 비교적 자유롭게이루어진 사실을 참고해 보면 고구려에서도 시장이 설치·관리되고 상거래가 있었을 것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상인으로서는 행상도 있었다. 《삼국사기》의 미천왕본기에 의하면 봉상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던 乙弗(후일의 美川王)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압록강 일대를 다니면서 소금장수를 하였다고 한다. 생필품인 소금이 官에 의해서가 아니라 私商들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은 전체인구에서 볼 때는 매우 극소수였을 것이다.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한 경제체제하에서 상업활동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업을 기본 산업으로 한 국가의 형편상 상업활동은 역시 억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상인은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았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소금장수 을불이 한 할미의 무고로 말미암아 관리에게 매를 맞고 소금까지도 거저 주어야 했던 현실에서 그같은 점을 알 수 있다.

(4) 목축업

고구려의 시조 설화를 보면 돼지나 말 등 가축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몽이 東扶餘의 왕 金蛙의 말을 기르는 직책을 맡았다고 한 것을 보면¹⁵⁾ 고구려인들의 생업에서 목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을 것을 짐작케한다. 같은 종족인 부여에 馬加, 牛加 등 짐승명을 가진 관명이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특히 농업의 비중이 후기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커진 만큼 반대로 목축의 비중은 국초로 갈수록 그 비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후기에도,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란이나 말갈족은 여전히 본래의 생업인 목축에 크게 의존하였다. 고구려 영향하의 거란인들은 말갈족에 비하여 적은 수였겠지만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다. 말갈의 경우는 이들에 비하여 농업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으리라 보인다.

고구려에서는 돼지와 말이 널리 사육되었는데 돼지는 식용과 제사용으로 쓰였다. 말은 군용이나 사냥 그리고 일상의 교통수단으로 고구려인들의 생활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짐승으로서 국가나 개인에 의해 사육되었다. 아울러 말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품으로서도 흔히 쓰였다. 남조 宋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장수왕은 말 800필을 보낸 바도 있었다.16)이 밖에 소와 개 그리고 닭도 가정에서 흔히 사육되었다. 아울러 〈광개토대왕릉비〉에 의하면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던 유목민족들은 소와 말 그리고 양을 사육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金基興〉

4. 사회구조

1) 신분제

비록 신라의 骨品制와 같은 구체적인 신분제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고구려인들도 출생에 따라 그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백제인이나 신라인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

^{15) 《}三國史記》권 13, 高句麗本紀 1, 시조 동명성왕.

^{16) 《}宋書》 권 97, 列傳 57, 夷蠻 高句驪國.

고구려인들의 신분구조를 몇 등급으로 나누냐는 것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4~5등급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사정과 서술상의 편의에 따라 상위 신분에서부터 구성요소, 그들이 가지는 특권이나생활상 등의 문제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1) 귀 족

고구려는 혈연 및 지연공동체인 那의 연합체를 중심으로 하여 고대국가로 성장해 갔다. 따라서 국가의 중심 나가 어느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5部를 이룬 5개 나의 족장층이 자연히 국가체의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加라는 '족장'・'왕'의 의미를 갖는 官名을 갖고, 대대로 소속 집단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분의 권력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관직을 갖는 이도 있었지만 그의 가게가 갖고 있는 본래의 지배력에 의해 중앙에서도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국초에는 '兄'이라는 명칭을 띠고 있는 관직을 차지하였는데 점차보다 전문적인 관직이었을 '使者'류의 관직에도 취임하게 되었다.」)이들 귀족들은 국초에서부터 이미 5부의 귀족층 내에서만 혼인을 하여 배타적인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고구려초에 계루부 왕실과 연나부 明臨氏와의 지속적인 혼인관계도》 이같은 동일신분내 결혼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귀족은 5부 나아가 본래의 5나의 족장층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국가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새로 편입된 지역의 대족장층의 일부도 귀족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三國史記》태조대왕본기 22년조에 의하면 藻那를 정벌하고 그 왕자를 포로로 하였는데 그를 古鄒加로 삼았다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안약 3호분과 관련된 선비족 출신의 冬壽와 같은 자는 고구려에 투항하여 상당한 예우를 받는 귀족으로 살아 갔음을 볼 수 있다.

¹⁾ 金哲埈、〈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137等).

²⁾ 李基白, 〈高句麗王妃族考〉(《震檀學報》20, 1959), 88쪽.

귀족들은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계의 출현을 설명해주는 나름의 설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 속에서 동아시아의 왕족이나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던 성씨를 갖게 되었다. 성씨는 대개 그들의 출현의 연원과 관련이 있었다. 왕실의 解씨나 高씨, 왕비족이었던 연나부의 于씨는 물론이고, 샘에서 나왔다는 연개소문가의 淵씨를3) 위시하여, 많은 밥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성능좋은 쇠솥을 가지고 있었다는 負鼎씨,4) 그리고 지역의 족장이나 유력자로서 성씨를 갖게된 克씨・仲室씨・少室씨・大室씨 등이 그것이다.5) 특히 대실씨・중실씨・소실씨라는 성씨에서는 이들 성씨의 명칭에 상호 대비되는 면이 있음을 볼수 있는데, 이 3성씨의 성씨 취득과정의 순서나 이들 귀족들의 세력의 정도가 성씨명에 반영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같은 고구려의 귀족은 성씨를 갖는 존재들인 만큼, 그 귀족들의 가계와 연원 등이 적혀있는 일종의 귀족 씨족의 명부인 성씨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삼국사기》에 성씨 취득의 연원들이 적지않게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씨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 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귀족들은 소속된 가문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국가의 주요관직을 독점하였다. 왕족의 경우 좀더 우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관직 취임에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5부의 중심귀족들은 자기 부의 세력과본인의 능력에 따라 모든 관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집안의 권력이 클수록初任의 관등을 보다 적은 나이에 받은 듯하며 승진에도 유리하였다. 연개소문의 아들 男生은 불과 9세에 先人이라는 최하급 관등을 가진 이래 15세에中裏小兄, 18세에 中裏大兄을 거쳐 승진을 거듭하여 28세에 莫離支에 올랐다.6)

^{3)〈}高句麗泉男生墓誌銘〉(李蘭暎,《韓國金石文追補》,中央大 出版部,1968),255\.

^{4) 《}三國史記》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4년 12월.

⁵⁾ 앞의 3개의 성씨는 《三國史記》권 13, 高句麗本紀 1, 시조 동명성왕 즉위 기사에 보이며, 대실씨는 《三國史記》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15년 3월조 기사에 보인다.

^{6) 〈}高句麗泉男生墓誌銘〉(李蘭暎, 앞의 책).

(2) 중ㆍ하급 지배층

귀족의 밑에는 대대로 전문적인 중·하급 관리나 초급장교 등의 직책을 맡는 중·하급 지배층이 있었다. 이들은 국초의 중·소 족장층이나 권력에서 멀어진 중앙귀족의 방계 등과 5部의 部員으로서 국가건설에 공로가 많은 자들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보인다. 3세기 이전의 고구려의 사회상을 전해 주는 《三國志》고구려전에는 "그 나라의 大家는 농사를 짓지 않으며 좌식자가만여 구이다. 下戶들이 멀리서 쌀과 식량·생선과 소금을 쳐다가 바친다"라고 하였다. 대가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3만 호에서 만여 구라는 수는 귀족의 인원수 만이 아니고 戰士나 使者를 위시한 중·하급 관리 등을 포함한 숫자였을 것이다. 농사도 짓지않고 국가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자들의 다수는 바로 중·하급 지배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 피지배층과는 구분되어 직업적으로도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계층이었던 만큼 별도의 신분층을 이루었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은 고구려군의 핵심이 되는 군사력으로서 보병이나 기병의 주축을 이루었을 것이며, 일반민까지 전쟁에 동원되는 삼국시대 중·후반에는 초급 지휘관으로서도 활동하였을 것이다. 이들도 신분내 결혼을 원칙으로 하였을 것은 물론이다.

(3) 호 민

하급 지배층과 일반민 사이에는 양 신분과 접속되는 신분인 豪民층이 있었다. 이들은 국가의 관직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도적인 경제력과 그들을 국가행정의 말초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국가의 보호를 바탕으로 일반 주민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다. 이들은 국가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지방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투 추세 속에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지배력을 잃어가는 지방의소족장의 후예들을 주류로 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권력의 지방통치에 적극 협력하여 지위가 상승한 자들 및 군공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지위를 얻은

자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신라의 경우 촌주로 선출될 수 있는 지방유력자 층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 그 구체적 실례는 〈廣開土大王陵碑〉에 나오는 國烟을 들수 있다. 비문에 의하면 왕릉을 청소하는 자들이라고 보이는 看烟에 비해 그 1/10에 불과한 국연이라는 존재가 보인다. 이들은 명칭에서 이미 간연과는 다른 존재임을 보이고 있는 바, 그 숫적 비율에서 볼 때도 일반민으로 구성되는 간연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위의 신분층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도 전통적으로 土・庶의 구성비를 1:10으로 보고있는 바 국연을 이루는 이들이 평민들과는 구별되는 유력자층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같이 국가의 중요 직역—지방 촌의 유력자로서 조세수납 등에 협조하는일, 아전으로서 지방행정 수행, 유사시 촌민으로 구성된 지방군의 지휘, 왕릉의 관리 및 제사의 일정부분의 책임분담 등—을 맡고 있는 이들은 고구려국가통치의 말초신경과 같은 존재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이들도 나름의 신분내 혼인을 하였을 것이며, 지방의 局堂에서 글과 무예를 익히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바로 이 호민들의 자제였을 것이다.

이들은 대대로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를 위시하여, 국가의 직역 수행이나 전공 등의 반대급부에 의하여 향촌에서 지도적인 지위와 경제력을 확보하고 살았을 것이다.

(4) 평 민

대다수의 주민은 평민으로서 피지배층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국초에는 5부를 위시한 집단의 주민으로서 국가의 성원이 되었다. 《삼국지》 동이전에 다수 드러나고 있는 족장이나 대가, 호민 등의 정치 경제적 지배하에 있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下戶라는 존재가 이들이다.7) 국가의 통치력이확대되고 종래의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이들은 종래의 토착적 지배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국가의 公民으로서 자리해 갔다.

이 평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병졸로서 국가의 기본적인 무력이 되는 국

⁷⁾ 洪承基,〈1~3世紀의「民」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63, 1974), 27等.

가의 기초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평민들은 호민과 지방관의 지도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들의 家計는 독립적이어서 각 가정의 경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존재였다. 이들은 소규모의 자영지를 갖고 있었으나, 사회 경제적 경쟁과정에서 뒤져서 토지를 일부 잃거나 무전농민으로 전략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타인의 토지경작에 품을 팔아 살기도 하였는데,8) 자연재해나 고리대 또는 세금의 연체 등에 의하여 평민으로서의 신분에서 탈락하여 노비가 되는 비극을 맞기도 하였다.

《周書》고려전에 의하면 "가난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公私의 빚을 진 자는 그 자녀를 노비가 되게하여 상환케 함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경제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평민들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는 자녀를 노비로 파는 일만 언급되고 있지만 결국은 호주를 위시한 모든 가족이 노비가 되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려져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적지않은 수의 채무노비가 평민들로부터 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평민들의 생활은 전통사회의 농민들의 생활과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고구려의 평민층도 일부 독서를 하였다는 것이다. 《舊唐書》나《周書》의 고려전에 의하면 '시골의 비천한 집의 자제까지도 경당에 모여글을 읽고 활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향촌에서 호민층과 평민들간의 신분적 차별이 실생활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런데 평민자제들이 글을 배우고 활쏘기를 열심히 한 것은 이들의 일부가 하급품계를 가질 정도의 군사나 하위관리에 취임하는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케해준다.

(5) 노 비

고구려에서 최하위 신분층은 노비였다. 사료에 의하면 고구려에서 노비의 생성요인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쟁의 포로로서이다. 숱한 침략과정에서 적지않은 인원이 포로로

^{8)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고국천왕 16년 10월.

잡혀와 노비로 부림을 받았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죄자 혹은 범죄자의 가족으로서 노비가 되는 경우이다. 《삼국지》고구려전에 의하면 "감옥이 없으며 범죄가 있으면 諸加들이 평의하여 곧 죽이며, 그 처자는 노비가 되게 한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되는 경우이다. 《주서》고려전에 의하면 자녀를 노비로 삼아 公私의 빚을 갚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타인의 牛・馬를 죽인 자는 노비로 삼도록 하였다.》이는 범죄에 대한처벌인 동시에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도 할 것이다. 위의 4가지 경우외에 유괴 등에 의한 노비화 등을 상상해 볼 수 있겠으나 고구려사회의치안상태나 엄정한 법집행의 형편에서 볼 때, 그같은 일이 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4가지 경우에서 노비가 사회적으로 어떤 처지에 속했을 것인지는 짐작이 간다. 우선 이들은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을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포로나 범죄자 혹은 범죄자의 가족은 결코 사회의 정상적인 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은 국가기관이나 귀족 기타 경제력이 있는 자, 즉 노비주의 소유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특히 牛・馬를 죽인자는 노비로 삼는다고 한데서 노비는 우・마와 대치될 수 있는 존재임을 잘알 수 있다.

이러한 노비들이 정상적인 가족구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비주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그같은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노비들은 일상생활에서 주인의 시중을 들기도 하고 농사나 가내공업 등에도 종사했을 것이다. 특히 전쟁을 통해 창출된 다수의 노비들은 공을 세운 귀족들에게 토지와 함께 내려져 귀족들의 대토지경영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노비의 해방은 구체적인 사례로는 보이지 않으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빚을 갚지 못해 자녀를 노비로 내 줄 수밖에 없었던 부모가 만약에 뒤에 그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면 그의 자녀는 노비에서 해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실제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임은 물론이다.

^{9) 《}舊唐書》 권 199 上, 列傳 149 上, 東夷 高麗.

2) 법률과 풍속

(1) 법 률

사회와 국가를 지속적이고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강제적인 법을 제정하여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기 마련이다. 고구려에도 물론 법이 있었으며, 단편적이지만 조항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고구려의 국가적인 법체계 즉 律令은 소수림왕 3년(373)에 반포되었다. 그런데 이 때의 율령은 前秦과의 우호적인 교류 속에서 수입된 西晋의 泰始令이 모범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10) 그러나 이같이 중국에서 체제화된 율령이 국가운영에 적용되기 이전에도 물론 고구려사회에는 법률이 있었다. 그리고 비록 율령체제를 갖추었다고 하여도 고구려사회가 처한 역사·문화·경제적 제조건이 있었던 만큼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율령의 유입에 의하여 일신될 형편도 아닐 것이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법률조항들의 편린들을 통해서 고구려사회 법률의 성격과 그것이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어떠한 변화상을 보였는지 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고구려의 사회구조 나아가 사회상을 알아 보자.

3세기 이전의 사회상을 전하고 있는 《삼국지》동이전에 의하면 고구려에는 "감옥이 없고 범죄가 발생하면 諸加들이 회의하여 곧바로 죽이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같은 책의 부여에 관한 사실에서는 좀더 자세한 관련조항이 보이고 있다. 즉 "형벌을 줌이 엄격하고 급하며 살인자는 죽이고 그 집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 절도는 하나에 열둘로 갚도록 하며, 남녀가 잘못 정을 통하거나 부인이 妬忌하면 모두 죽인다"라고 하였다.

잘 알고 있는 대로 고구려와 부여의 주민은 혈통이나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웠다. 따라서 두 사회의 관습법도 매우 유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리란 추정을 할 수 있다.

¹⁰⁾ 고구려 율령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盧重國、〈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東方學志》21, 1979).

인용한 두 사회의 법관계 내용에서 적어도 고구려와 부여사회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리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고구려의 관련조항은 매우 간략하여 대비에 무리가 없지 않다. 그런데 삼국시대 후반의 상황이지만 《주서》 고려전에 의하면 고구려의 경우에도 도둑질에 대하여는 10여 배로 변상하였다는 조항이 전한다. 그리고 《구당서》의 고려전에는 12배를 물리고 있었음을 전한다. 여기서 고구려의 국초에도 부여와 유사한 절도죄에 대한 변상법이 있었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삼국사기》중천왕본기에 의하면, 중천왕은 사랑하는 후비인 관나부인이 왕비에 대하여 투기한다고 하여 그녀를 부대에 넣어 강에 던진 사실이었다. 이를 통해 보면 고구려의 전통적인 관습법하에서 부여와 같이 여자의투기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여겨지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3세기 이전 부여와 고구려의 관습법이 거의 같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경우 제가가 평의하여 곧 사형에 처하던 범죄의 주류가 살인죄인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3세기 이전 고구려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관습법의 금지조항을 재구성해 볼 수 있겠다. 살인과 도둑질, 투기, 결혼한 남녀의 私通 그리고 고조선사회의 犯禁八條에 보이는 傷害에 관한 조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人倫에 관한 것과 사회나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회성원간의 우의에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같은 조항들은 국가성립 이전부터 있어온 관습법으로 당시 사회가 처한역사적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공동체사회에서 계급사회 궁극적으로는국가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회·경제현상인 사적 소유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간의 이익의 충돌에서 야기되기 쉬운 살인죄는 물론 절도죄에 대하여 엄격한 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이들 조항은 사회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기본장치이기도 하지만, 재산이 있는지배층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정이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인 자의 가족원이 노비가 되어야 하는 연좌제는 물론이고, 결혼한 남녀의 사통 이 엄금되고 있는 사실은, 사유재산제의 발달과 국가의 성립과정에서 가정이 갖는 사회·경제적 주체로서의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재산소유의 주체가 되고 있는 가정이 사회적으로 각종 책임을 담당하는 최소단위로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여자의 투기가 엄금되는 사실도 남성(가부장)의 우위를 드러내주는 한편 가정의 안정도모라는 면을 가지고 있음도 물론이다.

고구려의 발전은 소수림왕·광개토대왕 이후 비약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소수림왕 때 고구려는 이미 중국에서 사용되어온 성문법체계를 받아들여율령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영토의 확대와 다양한 종족을 지배하게되고, 농업 등이 발전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에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사회·경제·종족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율령의 개정과 보완작업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가 없는 만큼 단편적인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법률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고구려 후반의 법률은 성문법적인 律令체제를 기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전반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고구려라는 역사체가 존속하는한 율령체제가 도 입되었다고 하여 법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일변할 수는 없었다.

전해지고 있는 후반기의 법률조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서》나《수서》 및《구당서》의 고려전에 의하면 형률로는 반역죄를 가장 먼저 들고 있다. 그 처벌 또한 혹독하여 '먼저 불로 태우고 이후에 목을 잘랐으며 그 집은 적몰한다'고 하였다. 또한성을 지키다 항복하거나 적진에 임해서 패배한 장수도 사형에 처했다. 이같은 국가우선주의는 세금의 체납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주서》 고려전에 의하면 '公私債를 갚지 못하게 되면 자녀를 노비로 팔아 갚도록 하는 것을 허락했음'을 알 수 있다. 공사채의 公債는 賑貸法에 의한 대여곡물의 미상환과조세 체불이 주종을 이룰 것인데 이를 받아내기 위하여 채무자의 자녀를 노비로 팔게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전반기 5부에 의한 연합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주민들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던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가 국가체제가 확립된 후기에는 가장 우선적인 의무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국초 이래의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는 관행들도 여전히 법으로 규정되고 있

었다. 도둑질에 대한 10여 배의 변상이 그러하며 牛·馬를 죽인 자는 노비로 삼았다는¹¹⁾ 조항에서도 확인된다. 살인이나 정조에 관한 법률도 여전히 유효 하였다. 《구당서》 고려전에 의하면 살인자나 겁탈자는 목이 잘리웠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구려 법률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우선, 국초보다는 후반기에 보다 국가우선의 법률조항들이 보강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사유재산제의 보호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실이기 도 하겠는데 경제·사회적 주체인 가정이 적극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아 고구려의 법은 응보율적인 엄격한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흔히 지배계급의 착취와 안녕을 보장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된다. 물론 이같은 이해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같이 엄격한 법체계는 고구려가 공동체단계의 역사로부터 발전하여온 지 얼마되지않는 역사적 단계에 있었던 점에서 유래된 면도 있다. 지배·피지배관계가형성되어 있지만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이나 지방 그리고 국가 등 소속집단의 안녕과 영속을 위해 공동체단계 이래 요구되어온 전성원의 헌신적인 충성을 여전히 요구하고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구당서》 고려전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구려는법이 엄하여 심지어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워가지 않았다고 한다. 언뜻 보아서는 강력한 법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회상을 전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같은 점은 법이 엄해서라기보다는 주민간의 긴밀한 유대로 상호간에 재산상태 등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흘린 물건조차 주워가지 않는 공동체적 삶의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2) 풍 속

풍속에 포함되는 요소는 매우 많다. 본서에서는 신앙이나 의식주생활 등은 별도의 항목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겹치지 않는 내용을 자료가 허락하는 한도에서 살펴보겠다.

고구려인들은 歌舞를 즐겼다. 邑落에서는 저녁에서 밤까지 남녀가 떼로

^{11)《}舊唐書》 권 199 上, 列傳 149 上, 東夷 高麗.

모여 노래하고 놀이를 하며 즐겼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은 깨끗하였고 술을 비롯한 발효식품을 잘 만들어 먹었다 한다. 그리고 행동이 민첩하였다. 무릎을 꿇어 절할 때에도 한쪽 다리를 뻗었으며 걸음걸이는 달려가는 것과 같았다 한다.12) 기력이 넘치며 전투를 익히는 삶을 살았다. 사냥을 통해서 전투력을 익힘은 물론 청소년들은 경당에서 글과 더불어 활쏘기를 일상적으로 익혔다.13) 봄·가을로 왕이 참석하는 사냥대회가 수도의 교외에서 열렸으며, 연초에도 왕의 참석하에 패수가에서 2패로 나누어 돌을 던지는 싸움을 하였다.14) 이같은 풍속은 지방에도 있었을 것인 만큼 고구려인들은 일상의 삶과 놀이에서 자연스럽게 전투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父子가 같은 개울에서 멱을 감고 같은 방에서 잤다.15) 일반민들의 경제력으로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집을 가질 수 없었던 현실에서 부자가 함께 잠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이같은 주거 조건 이외에도 아직 유교적 질서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간의 사랑이 매우 돈독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결혼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많이 남아 전한다. 결혼은 부모나 친족들이 상대방의 부모나 친족들과 약속하는 일종의 중매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신랑·신부가 될 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참작한 듯하다.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집앞에 찾아가 자기 이름을 고하고 신부와 함께 자게해달라고 신부의 부모를 조름으로써 시작되었다. 재삼 조르게 되면 부모는 신랑을 들여 壻屋에서 신부와 동침케 하였다. 그런데 서옥 즉 사윗집은 약혼한 다음에 신부집에서 집안에 별도로 지어둔 작은 집이었다. 결혼한 부부는이 곳에서 아이를 낳아 다 자랄 때까지 살다가 친가로 돌아갔다.16)

결혼에는 지참금이나 신부값은 없었다. 결혼식에는 신랑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신부의 집에 보낼 뿐 다른 예물 등도 없었던 듯하다. 신부의 집이 가난

¹²⁾ 이상의 풍속은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13)《}舊唐書》 권 199 上, 列傳 149 上, 東夷 高麗.

^{14)《}隋書》 권81, 列傳46, 東夷高麗.

^{15) 《}周書》 권 49, 列傳 41, 異域 高麗. 《隋書》 권 81, 列傳 46, 東夷 高麗.

^{16)《}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高句麗.

하여 신랑집으로부터 혹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그들은 딸을 노비로 판다는 큰 비난을 받았다 한다.17)

지금으로 볼 때는 다소 독특한 결혼방식이 있었다. 형이 죽은 경우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방식이다. 18) 흉노나 고대의 이스라엘 등 유목민족 사이에 흔히 있는 풍속이다. 유목문화에 인접해 있던 고구려에도 이같은 풍속이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풍속은 고구려의 중반 이후 점차 소멸되어 갔다고 여겨진다.

고구려인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곧 壽衣를 만들었다.19) 중국인들은 이 사실을 비정상적인 일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풍속은 성인으로서 국가와 가정을 위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분명한 死生觀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이 죽으면 3년간 집안에 관을 놓아 두었다가 길일을 택하여 묻었다. 초기에는 금은이나 재물 등을 무덤에 많이 부장하였는데 후기에는 무덤안에 부장하기보다 무덤곁에 두었다가 장례에 참가한 이들이 가져가게 하였다 한다. 장례에는 북을 치고 노래하여 사자를 송별하는 풍속도 있었다. 부모나남편의 상에는 3년간 상복을 입었으며 형제의 상에는 3개월간 상복을 입었다.20)

〈金基興〉

^{17)《}周書》 권 49, 列傳 41, 異域 高麗. 《隋書》 권 81, 列傳 46, 東夷 高麗.

¹⁸⁾ 盧泰敦、〈高句麗 초기의 娶嫂婚에 관한 一考察〉(《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論 叢》, 1983), 참조.

^{19)《}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高句麗.

^{20)《}周書》 권 49, 列傳 41, 異域 高麗. 《隋書》 권 81, 列傳 46, 東夷 高麗.

찾 아 보 기

[7]

가 加 209 가내수공업 家內手工業 206 가라달 可邏達 175,176 가무 歌舞 218 가언충 賈言忠 139 가정 家庭 216, 220 각루 角樓 189 간연 看烟 212 간주리 干朱里 88 갈사국 曷思國 32 강철제 도끼 鋼鐵製 도끼 21 개간작업 開墾作業 21 개마국 蓋馬國 39 개모성 蓋牟城 132, 134, 187 개병제 皆兵制 58 거란 契丹 75, 76, 93, 114, 118, 199, 203, 208 거란족 契丹族 8,49,81 거칠부 居柒夫 87,88 건국신화 建國神話 59 건무 建武 102,120 건안성 建安城 132, 134, 187 견 絹 197 결혼 結婚 219 경관 京觀 126 경당 局堂 183, 212, 213, 219 경자년 출병 庚子年 出兵 69,84 경작권 耕作權 191 계단식 적석총 階段式 積石塚 1 계단적석묘 階段積石墓 17 계루부 桂婁部 28~31, 33, 39, 45, 59,

149, 150, 156, 209 계루부왕권 桂婁部王權 28,30~33,36, $37, 39 \sim 41, 151, 154, 164, 168$ 계루부왕실 桂婁部王室 60 계루집단 桂婁集團 2,3,26~28 계민가한 啓民可汗 114,117 계필하력 契必何力 137, 138, 141 고구려왕계 高句麗王系 6 고구려 지도 高句麗 地圖 126,127 고구려현 高句麗縣 고구려후 추 高句麗侯 騶 18 고국양왕 故國壤王 60,63 고국원왕 故國原王 49, 62, 81 고노자 高奴子 56, 153, 171 〈고려기〉〈高麗記〉 158, 159, 162, 166 고려도인 高麗道人 50 고리대 高利貸 213 고모루성 古牟婁城 173 고모루성수사 古牟婁城守事 6,57 고문 高文 105,136 고분벽화 古墳壁畵 183 고신감 古神感 136 고연수 高延壽 132~134, 143, 177, 181 고운 高雲 65 〈고자묘지(명)〉〈高慈墓誌(銘)〉 29,94,175 고정의 高正義 133, 143 고조선 古朝鮮 24 고조선문화 古朝鮮文化 16 고추가 古鄒加 31, 34, 147, 149, 209 고현 高峴 87 고혜진 高惠眞 132~134, 177, 181 곡 谷 171~173 곡 穀 197

169

곡집단 谷集團

곡・촌 지방제도 谷・村 地方制度 38 골품제 骨品制 208 공납 貢納 7, 35, 40, 59 공동체적 성격 共同體的 性格 202 공동체적 유대 共同體的 紐帶 46, 218 공물 貢物 206 공민 公民 59, 212 공성구 攻城具 122 공손씨세력 公孫氏勢力 41 공채 公債 217 과절 過節 158 관구검 毌丘儉 35, 41, 170 관나부 貫那部 21, 28, 36, 47, 151, 154, 관나부인 貫那夫人 36 관노부 灌奴部 29, 34, 171 관등제 官等制 48, 54, 55 관료적 귀족 官僚的 貴族 48 관미성 關彌城 67 관산성 管山城 87 관습법 慣習法 53, 54, 216 관위령 官位令 162 관직제 官職制 54 광개토왕 廣開土王 57,60,64,67~69, 77, 82, 84, 85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 2, 3, 6, 13, 57, 58, 60, 67, 69, 75, 83 ~ 85, 94, 97, 172, 180, 200, 208, 212 교통로 交通路 38, 41 구다국 句茶國 39 《구당서》《舊唐書》 $213,216 \sim 218$ 9등호제 九等戸制 202 구려 句麗(驪) $18 \sim 20, 23, 24, 29$ 구루 溝漊 23, 28 구민 舊民 58, 172 국가공동체의식 國家共同體意識 51 국가우선주의 國家優先主義 217 국가적인 수공업 國家的인 手工業 206 국내성 國內城 15, 105, 109, 132, 185, 189 국사 國社 60

국상 國相 31, 32, 34, 37, 47, 148, 149, $151 \sim 154, 156, 164, 168, 179$ 국상제 國相制 34, 155, 156 국소대형 國小大兄 73 국연 國烟 212 국원성 國原城 70 국자박사 國子博士 56, 163 국조왕 國祖王 국중대회 國中大會 33 군두 郡頭 6, 182 군정관 軍政官 57 귀족 貴族 209 귀족연립정권 貴族聯立政權 8, 93, 99, 100, 102, 105 귀족연립체제 貴族聯立體制 92, 99, 102, 103 귀족회의 貴族會議 56, 166 귀족회의체 貴族會議體 $161, 165 \sim 167$ 균전법 均田法 194 그물추 15 금와 金蛙 208 기단적석묘 基壇積石墓 21.27 기와 206 김춘추 金春秋 9, 93, 130, 136

[_]

나 那 20, 29, 190, 191, 195, 202, 209 나국 那國 $21, 25, 27, 30 \sim 32$ 나국연맹체 那國聯盟體 25, 26, 29 나・당군사동맹 羅・唐軍事同盟 136 나부 那部 3, 21, 29, 30, 32, 34, 36, 40, 41, 45, 149~153, 155, 164, 168, 178 나부민 那部民 46 나부체제 那部體制 29. 33. $35 \sim 37$. 39, 40, 55, 94, 149, 153, 156, 163, 165, 168, 나부체제사회 那部體制社會 29 나부통치체제 那部統治體制 29, 33, 45, 171

나제동맹 羅濟同盟 68,70,85,87,89, 대가 大加 3,31,33~35,58,149~151, 163, 164, 169, 170, 178 90, 93, 109, 110 나집단 那集團 3, 21, 22~25, 27, 29, 대당주 大幢主 181 30. 169 대대로 大對盧 $8,99,100 \sim 102,110,$ 나통산성 羅通山城 187 128, 148, 161, 166, 167 48, 49, 50 낙랑 樂浪 대로 對盧 31, 133, 147, 148, 150, 151, 낙랑군 樂浪郡 5,9,24 153, 157, 161 낙랑태수 樂浪太守 41 대모달 大模達 161, 181 대무신왕 大武神王 남건 男建 104, 139, 140, 141 남부욕살 南部耨薩 대방 帶方 48~50 132 남산 男産 대방고지 帶方故地 104, 139, 141 49 남생 男生 대방군 帶方郡 104, 105, 138, 139, 210 5, 66, 71 남소성군 南蘇城軍 136 대방령 帶方令 41 남정 男丁 202 대보 大輔 154 남제 南齊 61 대사자 大使者 6.157 남진정책 南進政策 68, 70, 76, 78, 79. 대성산성 大城山城 185, 186 대수맥 大水貊 84, 86, 89 내평 內評 대수전략 對隋戰略 174 123 내호아 來護兒 119,120,122 대수정책 對隋政策 113 노객 奴客 대실씨 大室氏 210 67, 84, 96 노남리유적 路南里遺蹟 18 대왕 大王 60 노동력 징발권 勞動力 徵發權 194 대외정복 對外征服 노부 奴部 29 대인 大人 40 노비 奴婢 195, 206, 213, 214, 216, 217, 대전자 청동단검묘 大甸子 靑銅短劍墓 25 220 (대)주부 (大)主簿 32, 157 녹산 鹿山 74 대토지 소유 大土地 所有 193, 195 논농사 논農事 205 대학사 大學士 56 농기구의 생산 農器具의 生産 대형 大兄 56, 157 207 덕흥리 (벽화)고분 德興里 (壁畵)古墳 농안 農安 74 농업 農業 73, 74 205 누초 婁肖 8, 175, 176, 182 도교 道敎 125, 126, 129 도교진흥책 道敎振興策 103 [=] 도독 都督 175 도사 道使 175 다종족국가 多種族國家 200 독산성주 禿山城主 66, 81 돌괭이 15 단위정치체 單位政治體 48 돌궐 突厥 당주 幢主 161, 181, 182 $8, 80, 81, 91 \sim 93, 114, 116,$ 당 태종 唐 太宗 126, 127, 129, 131~ 117, 125

돌도끼 15

15

돌활촉

134, 137

대가 大家

180, 193, 211

224 삼국의 정치와 사회 I -고구려

동 橦 122 동맹제 東盟祭 4,33 동명 東明 33 동명설화 東明說話 2,3,13 〈동명왕편〉〈東明王篇〉 13 동부여 東夫餘 3, 61, 75, 76, 208 동수 冬壽 72, 73, 209 동예 東濊 19, 40, 49, 58, 169, 170 동옥저 東沃沮 40, 169, 170, 172, 178, 196, 199 동이교위 東夷校尉 62 동이매금 東夷寐錦 83 동진 東晋 50 동천왕 東川王 35, 41 동해곡 東海谷 170 돼지 208

마(말) 馬 20, 22, 208 마가 馬加 208 마리 摩離 40 마여 麻余 165 마한 소국 馬韓 小國 30 막리지 莫離支 99~101, 128, 139, 143, 161, 166, 210 막부제 幕府制 56 막하라수지 莫何邏繡支 181 만리집단 萬離集團 39 말갈 靺鞨 93, 114, 118, 199, 200, 203, 208 말갈족 靺鞨族 8,10,48,81 말객 末客 161,181 매크리 Mökli 19 맥 貊 18.19 맥족 貊族 1,2,18 머슴살이 193 명도전 明刀錢 2,18 명도전유적 明刀錢遺蹟 17 명림답부 明臨答夫 34, 40, 151, 155, 범금8조 犯禁八條

164, 168, 179 명림씨 明臨氏 47 명주 明紬 206 모두루 牟頭婁 6.74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 13.57.60. 94, 96, 173 모둔곡 毛屯谷 26, 147, 169 모용보 慕容寶 56 모용성 慕容盛 64 모용씨 慕容氏 48, 62, 63, 74 모용연 慕容燕 5 모용외 慕容廆 56 모용평 慕容評 49 모용황 慕容皝 49 목축 牧畜 208 무기단 적석총 無基壇 積石塚 무순 撫順 40 무전농민 無田農民 35, 213 문자왕 文容王 98 물길 勿吉 75, 79, 85 미송리(형) 토기 美松里(型) 土器 1,16 미유 彌儒 33 미질부 彌秩夫 70, 86, 90 미천왕 美川王 47, 62, 109, 171, 193 민정관 民政官 57 밀우 密友 168,179

[日]

박작성 泊灼城 136 발고추가 拔古鄒加 162 발위사자 拔位使者 157,160 방위부 方位部 36, 48, 152 방현령 房玄齡 136, 144 방효태 顧孝泰 138, 143 밭농사 밭農事 205 배구 裵矩 114, 117, 127 백두 百頭 182 백암성 白巖城 132, 134, 143, 187 216

범죄자 犯罪者 214 均 205 병기의 제작 兵器의 製作 206 보덕 普德 104 보장왕 寶藏王 103 봉상왕 烽上王 봉왕 封王 31 봉지 封地 194 부 部 190, 191, 195 부내부 部內部 5, 169 부분노 扶芬奴 40 부여 夫餘 5,19,35,75 부여계 夫餘系 199 부여성 扶餘城 105, 127, 140 부역 賦役 203 부역 징발기간 賦役 徵發期間 204 부용집단 附庸集團 199, 200 부위염 扶尉猒 40 부자계승 父子繼承 4, 5 부자상속 父子相續 37, 61 부절 不節 158 부체제 部體制 6 북부소형 北部小兄 56 북부여 北夫餘 3 북부여수사 北夫餘守事 57, 74 북부여출자설 北夫餘出自說 북부욕살 北部耨薩 132 《북사》 《北史》 157 북수남진정책 北守南進政策 109 북연 北燕 65, 68, 84 북옥저 北沃沮 39, 42, 169, 170, 172 북위 北魏 61, 65, 68, 74, 77, 79, 80, 84, 85, 89, 91, 93 북제 北齊 $8.80.91 \sim 93$ 북조불교 北朝佛教 북주 北周 91, 197 불교 佛敎 50, 51, 53 비루 飛樓 122 비류국왕 沸流國王 26 비류나부 沸流那部 21, 28, 47, 151, 154 3등호제 三等戶制 195, 201

비류부 沸流部 155, 156, 192 비류부장 沸流部長 30, 147 비류수 沸流水 26 비사성 卑沙城 122, 134, 187 비파형동검 琵琶形銅劍 16 비파형동검문화 琵琶形銅劍文化 16, 17 빈민 貧民 192,200 빈민층 貧民層 198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土器 15

[人]

사마 司馬 56, 163 사마선왕 司馬宣王 41 사부구 師夫仇 140, 143 사생관 死生觀 220 사성 賜姓 27, 31 사수 蛇水 138 사유재산제 私有財産制 $216 \sim 218$ 사인 舍人 162 사자 使者 31, 32, 40, 147, 150, 151, 153, 170, 211 사자계 관계 使者系 官階 37, 38 사자계 관등 使者系 官等 157, 158, 160 사자계 관위 使者系 官位 사적 소유 私的 所有 216 사직 社稷 33, 60 산상왕 山上王 36 산성 山城 184, 185 산성자산성 山城子山城 185, 186, 189, 190 살수 薩水 121 살수대첩 薩水大捷 121,123 살인죄 殺人罪 216 3경제 三京制 174 《삼국사기》《三國史記》 28, 29, 32, 33, 66, 67, 159 《삼국지》《三國志》 2, 29, 32, 147, 178, 179, 196, 205, 211, 212, 214, 215

226 삼국의 정치와 사회 I -고구려

삼베 206 소금 207, 211 상가 相加 31, 147, 148, 150, 165 소금장수 193 상리현장 相里玄奬 130,131 소노부 消奴部 $4, 26, 29 \sim 31, 33 \sim 35,$ 상복 喪服 220 60.149 상위사자 소노집단 消奴集團 上位使者 160 $2.25 \sim 27$ 상인 商人 207 소부손 所夫孫 136 상장 喪葬 54 소서노 召西奴 3, 14, 26 생구 生口 20, 22 소수림왕 小獸林王 39,50,51,53,56,66 서단산문화 西團山文化 1,16 소수맥 小水貊 18 소실씨 少室氏 서단산자형 토기 西團山子形 土器 210 16 서봉총 瑞鳳塚 소자하 蘇子河 60 40 서안평 西安平 소작민 小作民 41, 48 47 서옥 壻屋 219 소정방 蘇定方 137, 138 서천왕 西川王 36, 152 소형 小兄 157 석관묘 石棺墓 2, 3 소후 小后 47 석실봉토분 石室封土墳 73 속민 屬民 82 석전 石戰 183 속민지배 屬民支配 석현성 石峴城 속민집단 屬民集團 67 170 석황성 石黃城 133 손대음 孫代音 132, 143 선비 鮮卑 송 宋 77, 78, 84, 85, 89, 91 41 선비족 鮮卑族 송양 松壤 39 26, 31, 147 수 守 선인 先人 31, 32, 147, 150, 151 38, 173 선철제 주조도끼 銑鐵製 鑄造도끼 수곡성 水谷城 21 66 설만철 薛萬徹 수렵 狩獵 182 136 설인귀 薛仁貴 137, 140 수묘인 守墓人 57 성 城 171~174, 176, 182 수묘제 守墓制 60,94 수사 守事 성문 城門 189 6, 57, 173 《수서》《隋書》 성문법 成文法 111, 157, 175, 194, 196 53, 54 성문법체계 成文法體系 \sim 198, 200, 201, 217 217 성문사 省門寺 수성전 守城戰 123, 135, 143 50 성산산성 城山山城 189 수신 隧神 4,33 성씨 姓氏 210 수 양제 隋 煬帝 101, 114, 117, 120~ 성씨록 姓氏錄 210 122, 127, 131 성태왕 聖太王 60 수의 壽衣 220 세군 細群 80, 88, 165 숙군성 宿軍城 64 숙달 叔達 세포 細布 197, 198, 200 126 숙신 肅愼 세형동검문화 細形銅劍文化 16, 17 75, 76, 179 소가 小加 35, 149, 151, 163 순노부 順奴部 29, 34, 35 소골 蘇骨 162 순도 順道 50 소국제정치권 小國際政治圈 순수 巡狩 170 110

승 丞 31, 147, 149 시장 市場 207 식읍 食邑 179,194 《신당서》《新唐書》 157 신래한예 新來韓穢 172 신분제사회 身分制社會 51 신성 信誠 141~143 신성 新城 38, 105, 122, 123, 132, 134, 137, 140, 143, 187 신성재 新城宰 56 신성태수 新城太守 56 《신집》《新集》 59,101,163 실위 室韋 75, 79, 206 실직성 悉直城 85 실직원 悉直原 70 심양 瀋陽 14등 관등제 十四等 官等制 쌀 205

[0]

아도 阿道 50 아리수 阿利水 67 아신왕 阿莘王 67 안고 安固 137 안동도호부 安東都護府 10 안시성 安市城 132~135, 140, 187 안악 3호분 安岳 三號墳 72,74,183, 209 안원왕 安原王 88,97 안장왕 安臧王 88,97 안학궁성 安鶴宮城 184,186 알사 謁奢 157 약수리고분 藥水里古墳 183 약탈전쟁 掠奪戰爭 58 양만춘 楊(梁)萬春 134 양맥 梁貊 39, 40, 58, 169, 170, 179 양신 陽神 33 양원왕 陽原王 88 어량대도 魚梁大道 122

어지류 菸支留 33 여장 女墻 189 연 燕 16 연개소문 淵蓋蘇文 8,9,100,102,103, 126, 128~131, 138, 139, 143, 144, 167, 181, 182, 210 연개소문가 淵蓋蘇文家 112 연나부 椽那部 4, 21, 28, 30, 34, 36, 37, 40, 47, 156, 191, 209, 210 연맹체 聯盟體 $23 \sim 25$ 연수 延壽 60 연수명 은합우 延壽銘 銀合杆 60 연씨 椽氏 47 연정토 淵淨土 105 연좌제 連坐制 216 연호 年號 60 영 수 53 영락 永樂 60,73 영류왕 榮留王 102 영북부여수사 令北夫餘守事 영성 靈星 33 영양왕 嬰陽王 91,101 영역지배 領域支配 57 예 濊 18 예군남려 薉君南閭 20, 22, 24, 29 예맥 穢貊 18, 19, 41 예맥족 穢貊族 19 예속 翳屬 160 예속민 隷屬民 58 예족 穢族 2,19 오 吳 41 오골성 烏骨城 136, 176, 188 5나부민 五那部民 51 오녀산성 五女山城 15, 185, 189 5부 五部 $3, 6, 33, 174, 180, 209 \sim 212$ 오수전 五銖錢 18 오이 烏伊 40 오졸 烏拙 160 옥저 沃沮 19, 40, 49, 74

93, 181, 183, 195, 207

온달 溫達

운명공동체의식 運命共同體意識 47 온달산성 溫達山城 188 온사문 溫沙門 137 운제 雲梯 122,131 옹성 甕城 189 울절 鬱折 160,166 위 魏 41 왕경 王京 48 위두대형 位頭大兄 160, 161, 166, 175 위만조선 衛滿朝鮮 22 왕고덕 王高德 95.96 왕권강화 王權强化 47 왕당 王幢 58 왕망 王莽 27,28 왕산악 王山岳 95,96 왕실세계 王室世系 59,60 왕인공 王仁恭 122 유옥구 劉屋句 168,179 왕족 王族 210 유이민 流移民 46 왕팔패자 王八悖子 16 유인 遊人 197, 198, 200, 201, 203 왜·가야연합군 倭·加耶聯合軍 67, 유인원 劉仁願 140 69.82 유주자사 幽州刺史 73 외평 外評 174 유주자사 진 幽州刺史 鎭 56 요동군 遼東郡 63 윤회사상 輪廻思想 51 요동성 遼東城 119, 121~123, 132, 134, 율 栗 197 184, 187 율 律 53 요서 공격 遼西 攻擊 113,114,117 율령 律令 5,7,53~55,58,72,156,204, 요서지방 遼西地方 113, 115, 116, 122, 215, 217 123, 128, 143 율령반포 律令頒布 39,52,53,94 율령정치 律令政治 55 요하 遼河 64.137 욕리성 辱利城 140 율령제 律令制 53 욕사 褥奢 160 율령체제 律令體制 217 욕살 褥薩 8, 158, 174~177, 181, 188 은성 銀城 133 용작농 傭作農 34, 35, 37 을불 乙弗 38,207 용작인 傭作人 47 을지문덕 乙支文德 120, 121, 123 우 牛 20,22 을파소 乙巴素 37, 156, 171 우가 牛加 208 음모 陰牟 193 우문술 宇文述 119~122 읍락 邑落 168 우보 右輔 32, 33, 154 응보율 應報律 218 우수 于漱 36 의사사 意俟奢 160 우씨 于氏 47 의책 衣幘 25.28 우중문 于仲文 119~121 이경 犁耕 5,35 우진달 牛進達 136 이군구 李君球 138 우태 于(優)台 31, 32, 37, 147, 149~ 이도위자유적 二道崴子遺蹟 15 151, 153, 156 이문진 李文眞 163 우태 優台 14 이불란사 伊弗蘭寺 50 우하량유적 牛河梁遺蹟 1 이(세)적 李(世)勣 131, 132, 140, 141

이주민집단 移住民集團 26 인과응보사상 因果應報思想 52 인두세 人頭稅 8,59,194,202 인정 人丁 59 《일본서기》《日本書紀》 80 임나가야 任那加耶 67,69,70 임둔 臨屯 19,22 임무 任務 136

[ㅈ]

자연촌 自然村 57 자연호 自然戶 57 자영농민 自營農民 47 자영소농민 自營小農民 195 《ふえをひ》《資治通鑑》 72 잠지락 蠶支落 30 잡역 雜役 204 장군부 將軍府 56 장사 長史 56, 163 장손무기 長孫無忌 130 장수왕 長壽王 60,68,70,79,86,89, 장안성 長安城 112, 185, 187 장인 匠人 206 재 宰 38, 171, 173 재래신앙 在來信仰 51 재지지배층 在地支配層 52 적리성 積利城 136 적석묘 積石墓 17, 21, 25, 27 적석총 積石塚 1 적통대인 適統大人 31, 34 전객 典客 162, 163 전리품 戰利品 전사 戰士 전사법 佃舍法 전사집단 戰士集團 180 전연 前燕 63,74 전연왕 前燕王 49

전진 前秦 49,50,63,81 전축분 塼築墳 71, 72 절노부 絶奴部 29, 31, 34~36, 149 절도죄 竊盜罪 216 절풍 折風 151, 162 점유 占有 191, 195 정남 丁男 203, 204 정명진 程名振 137,138 제가 諸加 45, 168, 169, 179, 214, 215 제가평의회 諸加評議會 33 제가회의 諸加會議 4,45,56,148,155, $163 \sim 165$ 제사 祭祀 54 제수 祭須 191 제형 諸兄 160 조 調 202 조 租 202 조(좁쌀) 201, 202, 205 조공 朝貢 82 조나 藻那 21, 24, 28, 29, 178, 209 조복 朝服 25, 28 조선 朝鮮 19 조세 租稅 194 조세수취 租稅收取 40 조세제 租稅制 54 조・용・조 租・庸・調 196 조・조・역 租・調・役 196 조의 包衣 31, 32, 147, 150, 151, 153 조의두대형 包衣頭大兄 6.8 졸본부여 卒本扶餘 14 졸본지역 卒本地域 26 종묘 宗廟 60, 94 좌물촌 左勿村 38 좌보 左輔 33, 154 좌식자 坐食者 5, 35, 180, 193, 211 좌우보 左右輔 148, 151, 155, 156 좌우보제 左右輔制 34 좌평회의 佐平會議 167 주나 朱那 21, 24, 28, 29, 149, 178 주몽 朱蒙 59, 94, 182, 208

주몽설화 朱蒙說話 주몽세력 朱蒙勢力 169 주몽집단 朱蒙集團 26,29 주법상 周法尙 119 주부 主簿 31.147.149~151.153.157 차대왕 次大王 《주서》《周書》 157, 160, 175, 196, $197,213\sim214,216,217$ 주통촌후녀 酒桶村后女 36 중군주활 中軍主活 181 중리대형 中裏大兄 56 중리대활 中裏大活 181 중리도독 中裏都督 56 중리부 中裏府 56 중리위두대형 中裏位頭大兄 중실씨 仲室氏 210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中央集權的 統治體制 중앙집권화 中央集權化 47 중외대부 中畏大夫 33, 148, 149, 151, $154 \sim 156$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57,60, 철기 鐵騎 82, 83, 85, 157, 173 중천왕 中川王 36 중·하급 지배층 中·下級 支配層 211 지도 地道 122 지두우 地豆于 76,79 지둔도림 支遁道林 50 지모신 地母神 14 지방민 地方民 52 지방통치조직 地方統治組織 57 직원령 職員令 162 진 晉 53 진 陳 92, 93, 111 진대덕 陳大德 126.127 진대법 賑貸法 37, 193, 217 진번 眞番 19,22 집권적 국가체제 集權的 國家體制 36 집단예민 集團隷民 51, 58 집단예민지배 集團隷民支配 40

집단천민 集團賤民 57

2, 3, 5, 6, 13, 26 집안현성 集安縣城 184~186

[ㅊ]

151 참군 參軍 56, 163 창려성 昌黎城 창암성 蒼巖城 140 창조리 倉助利 152, 156, 165, 203 채무노비 債務奴婢 213 책 幘 151 책구루 幘溝漊 28 책성 栅城 170,176 처려근지 處閭近支 8,173,175~177 〈천남생묘지(명)〉 〈泉男生墓誌(銘)〉 56, 161, 181 천리장성 千里長城 103, 127, 128 천제 天帝 59 천존상 天尊像 125 천하관 天下觀 61 35 철기문화 鐵器文化 17,21,25 철제 농공구 鐵製 農工具 22 철제 농기구 鐵製 農器具 17, 35, 46, 207 철제보습 鐵製보습 46 청동단검묘 靑銅短劍墓 17, 25 청암동 토성 淸岩洞 土城 186 청야전술 淸野戰術 123 촌 村 38, 171, 172, 176 촌주 村主 212 최비 崔毖 62 추군 麤群 80, 88, 165 충차 衝車 131, 132, 134 취수혼 娶嫂婚 5.35 치 雉 189 친족집단 親族集團 48

[7]

콩농사 콩農事 205

[≡]

태대대로 太大對盧 104,167 태대사자 太大使者 162, 166, 167 태대형 太大兄 99,100,161,166 태막리지 太莫離支 104,167 태사 太奢 157 태수 太守 38, 56, 171, 173 태시령 泰始令 215 태시율령 泰始律令 53 태왕 太王 60,96 태자하 太子河 39 태조(대)왕 太祖(大)王 28,41,45 태학 太學 5,50,52,53,55,94,162,163 태학박사 太學博士 163 테뫼식 산성 테뫼式山城 184.188 토광묘 土壙墓 2,3 토성리 土城里 16,18 토지의 소유권 土地의 所有權 191, 195 토지제도 土地制度 190 통사 通事 162, 163

[亚]

215~217

투기 妬忌

패강 浿江 119, 138 패왕조산성 覇王朝山城 187 패자 沛者 31, 32, 37, 147~151, 153 평강공주 平康公主 195,207 평곽현 平郭縣 206 평민 平民 212, 213 평양성 平壤城 9, 112, 115, 119, 120, 141, 143 〈평양성석각〉〈平壤城石刻〉 160 평양천도 平壤遷都 68, 70, 78, 84, 95, 96 평지성 平地城 184, 185, 188 포 布 197,198 포곡식 산성 包谷式 山城 184, 186, 189

포로 捕虜 213, 214 풍홍 馮弘 65, 77, 78

[8]

하고성자성 下古城子城 184 하늘신 14 하백 河伯 14,59,94 하백녀 河伯女 33 하부단위정치체 下部單位政治體 하호 下戶 30, 35, 58, 179, 180, 193, 195, 196, 212 한강 하류 漢江 下流 110 한군현 漢郡縣 48 한대 토성지 漢代 土城址 한성 漢城 70, 79, 90, 110 《한원》《翰苑》 158, 159, 162, 166 한족 韓族 199 해부루 解扶婁 14 행상 行商 207 행인국 荇人國 39 헌성 獻誠 139 현도군 玄菟郡 2.5.23~25.27~29. 40, 41, 63 현도성 玄菟城 132,134 형계 관계 兄系 官階 37, 38 153, 157, 158, 160 형계 관등 兄系 官等 형수와 결혼 220 형제계승 兄弟繼承 4 형제상속 兄弟相續 37 혜량법사 惠亮法師 88 호국불교 護國佛敎 51 호등제 戶等制 201 호민 豪民 35, 179, 211~213 호민층 豪民層 47 호세 戶稅 59 호우 壺杅 60 호우총 壺杅塚 60,83 호조 戶租 8,201,202 호태(성)왕 好太(聖)王 60

232 삼국의 정치와 사회 I-고구려

혼하 渾河40환도성丸都城41, 185홀 忽23회원진 懷遠鎭129홍산문화紅山文化1후연 後燕63~65, 68, 77화백회의和白會議167후조 後趙48, 50, 62환권桓權127후한 後漢41환나부桓那部21, 29, 151, 154, 155흑구산성黑溝山城187

집 필 자

개	요노태돈
	I.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의 기원여호규
2.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여호규
	Ⅱ. 고구려의 변천
1.	체제정비김현숙
2.	영토확장
3.	5~6세기의 대외관계
4.	후기의 정세변동임기환
	Ⅲ. 수·당과의 전쟁
1.	수와의 전쟁이호영
2.	당과의 전쟁 이호영
	IV.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1.	중앙통치조직임기환
2.	지방·군사제도임기환
3.	경제구조김기흥
4.	사회구조김기흥

한 국 사

5

삼국의 정치와 사회 I-고구려

1996년 9월 30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6년 10월 5일 발행 (No. 96-12-6-10) 발 행 국사 편 찬 위 원 회 42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담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서계동 260-1 전화 730-8670